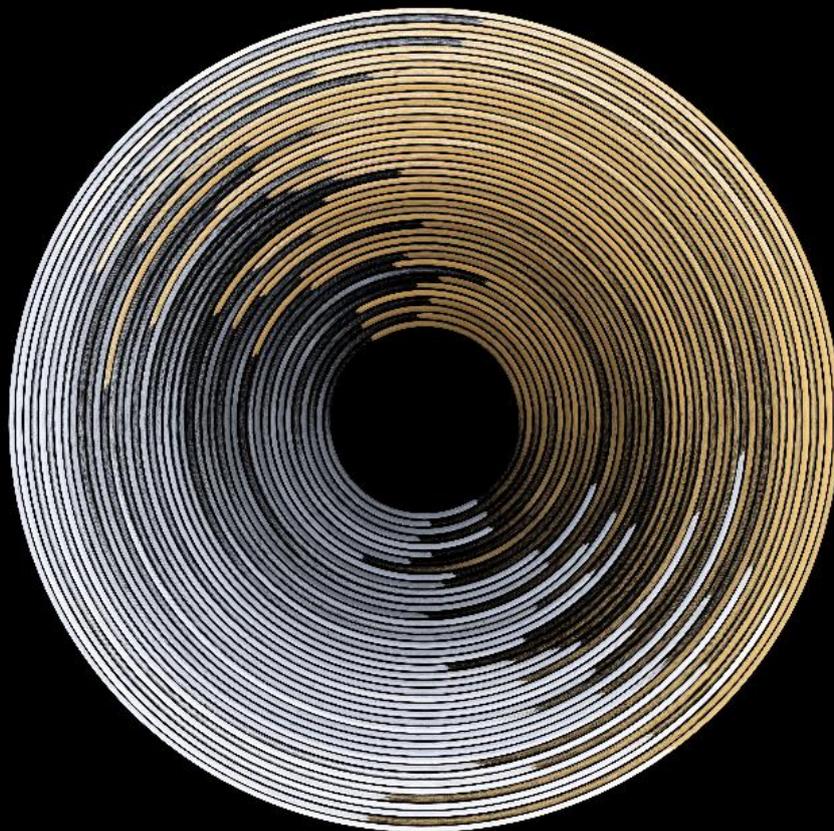


Deloitte.



2023.12 | 제 2호

#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국내 KOSPI 200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 정보를 분석하고 주요 규제 동향을 담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 04

- ① 감사위원회 설치 • 05
- ② 감사위원회 구성 • 08
- ③ 감사위원회 독립성 • 10
- ④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 14
- ⑤ 감사위원회 안건·찬성률 • 19
- ⑥ 감사위원회 회의 • 23
- ⑦ 감사위원 전문성 • 26
- ⑧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30
- ⑨ 내부감사부서 • 36
- ⑩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43
- ⑪ 감사위원회 교육 • 51
- ⑫ 감사위원 보수 • 56
- ⑬ 결언 • 58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 59

-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59
- ②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65
-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70
- ④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78
- ⑤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81
- ⑥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86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 요약

- 국내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감사위원회는 균형있는 거버넌스(G) 체계 정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이에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및 C레벨 등에게 유가증권 상장법인 코스피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주요 현황과 관련한 공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함

### 배경

-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기구에서 최고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균형 있는 거버넌스(G) 체계 정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임
- 또한, 국내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관련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연관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섹션의 공시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해보고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
  - 분석대상인 KOSPI 200 기업은 국내 산업별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군이지만 국내에서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유관한 공시 정보 분석자료는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아래의 기본 공시 정보항목을 DB화 하고 이를 활용하여 센터 고유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 국내 KOSPI 200 감사위원회 현황 분석과 더불어 이와 유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료도 각 섹션별로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 분석 항목

- |                    |                             |
|--------------------|-----------------------------|
| ① 감사위원회 설치         | ⑧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 ② 감사위원회 구성         | ⑨ 내부감사부서                    |
| ③ 감사위원회 독립성        | ⑩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 ④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 ⑪ 감사위원회 교육                  |
| ⑤ 감사위원회 안건·찬성률     | ⑫ 감사위원 보수                   |
| ⑥ 감사위원회 회의         |                             |
| ⑦ 감사위원 전문성         |                             |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 감사위원회 설치

### 현황

- 국내 감사위원회 제도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 지원 조건인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됨
- 실질적인 도입 이유는 기존의 감사가 법에서 요구되는 기대수준 대비 실제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기업의 경영 감사·감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임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회사에 대한 감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회사의 회계와 공시가 적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기구에서 최고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균형있는 거버넌스(G) 체계 정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구임
- 1999년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sup>1)</sup>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됨<sup>2)</sup>
  - 상법과 외부감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수 차례에 걸친 법규의 제·개정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공시, 스투어드십코드,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도입 등을 통해 통하여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 요구사항은 계속 정비되고 있음
- FY2023 반기 기준, KOSPI 200 기업 중 173사(86.5%)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전기대비 1.5%p(1사) 증가함

<그림 1> FY2022 vs. FY2023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sup>3)</sup>



1) 상법 제542조의11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3) KOSPI 200 기업 FY2022 반기보고서 및 FY2023 반기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 감사위원회 설치

- FY2023 반기기준, KOSPI 200 기업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73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142사 (82.1%), 법적으로 의무 설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은 31사(17.9%)임
-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기업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거버넌스 정립의 개선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됨

<그림 2> FY2023 KOSPI 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자산 구분<sup>4)</sup>



<표 1> 상법 상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법규

구분	설명	상법 해당 조문
감사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함(예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li> <li>• 비상장기업이나 자산규모 2조원에 미달하는 상장 회사의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음. 단, 감사위원회 설치 시 감사를 둘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09조 제1항, 제4항</li> <li>• 제415조의2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42조의10 제1항</li> <li>• 시행령 제36조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42조의11 제1항</li> <li>• 시행령 제37조 제1항</li> </ul>

4) FY2023 반기보고서 공시내용(재무제표)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 감사위원회 설치

### 해외 감사위원회 설치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장규정에서 상장회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3인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유지를 요구하고 있음<sup>5)</sup>
- 미국법률가협회(ALI)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공표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ALI원칙”)은 감사위원회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보다 공고히 하고 있음
  - 대형상장회사(동 원칙 §1.24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가 2천명 이상이고, 자산이 1억달러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제언함<sup>6)</sup>

5)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s

6)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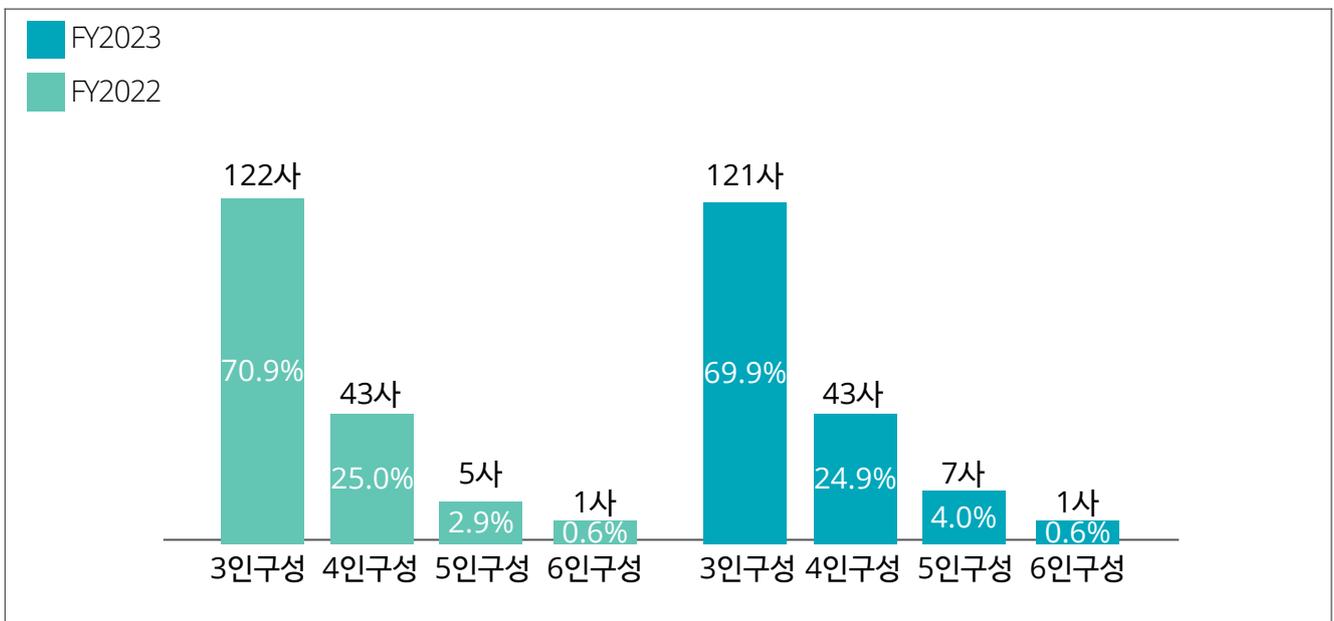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2. 감사위원회 구성

### 국내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적절한 감사위원회 규모는 효과적인 안건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유연한 감사위원회 일정 수립에 도움이 됨
  - 감사위원회의 규모는 회사의 상황에 대응이 적합한 규모여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 정도에 따라 달라짐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3인구성 감사위원회의 비중이 68.9%(121사)로 가장 높았으며 4인구성(24.9%, 41사), 5인구성(4.0%, 7사) 및 6인구성(0.6%, 1사)으로 나타났음<sup>1)</sup>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3인구성 감사위원회의 비중이 70.9%(122사)로 가장 높았으며 4인구성(25.0%, 43사), 5인구성(2.9%, 5사) 및 6인구성(0.6%, 1사)로 나타났음<sup>2)</sup>

<그림 1> FY2022 - FY2023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구성<sup>3)</sup>



1,2) 1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퇴임에 의해 일시적인 2인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어 그림에서는 제외함

3) FY2023 반기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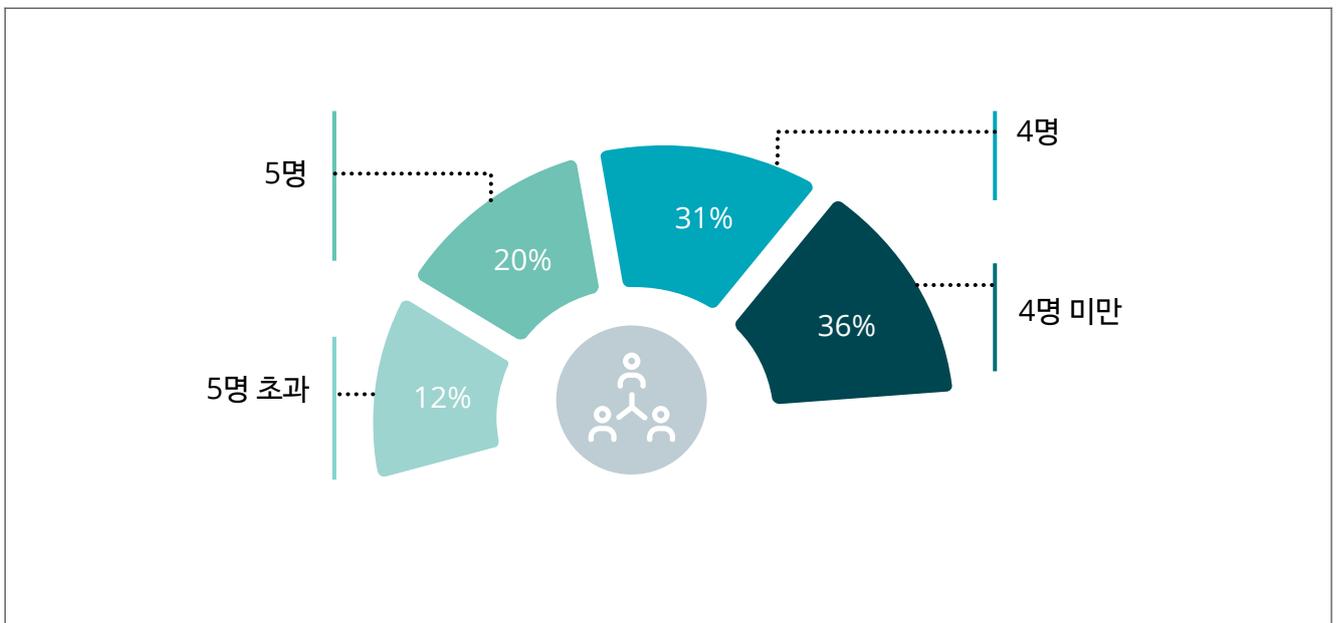
## 2. 감사위원회 구성

### 미국 감사위원회 구성

□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미국을 본거지로 하는 대형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4명 이상 규모 비중은 64%로 나타났음

- 감사위원회 규모는 4명 미만(36%), 4명(31%), 5명(20%), 5명 초과(1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FY2022/FY2023 글로벌 감사위원회 구성 규모 설문결과<sup>4)</sup>



4)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 2022.08.~10.에 조사된 미국 기반 대형상장사(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감사위원 181 명 대상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3. 감사위원회 독립성

### 국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중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당해 해당회사와의 고용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어나 집행임원 및 감사와의 관계, 모회사·자회사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및 회사의 이어나 집행임원이 이어나 집행임원을 겸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격요건을 두고 있음

<표 1> 상법 상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및 결격요건

구분	설명	상법 해당 조문
감사위원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 제415조의2 제2항
	•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함	• 제542조의11 제2항
	• 사외이사의 업무 관련성,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결격요건이 규정됨	• 제382조 제3항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결격요건 해당 시 그 직을 상실함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위 요건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독립성 관련 결격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됨	• 제 542조의8 제2항
	•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독립성 관련 별도의 결격요건 규정이 있음	• 제542조의10 제2항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도 독립성 관련 결격요건이 적용됨	• 제542조의10 제2항 • 제542조의11 제3항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3. 감사위원회 독립성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 수는 총 578명으로 전기대비 7명(1.2%p) 증가함
- FY2023 KOSPI 200 기업 중 167사, FY2022 KOSPI 200 기업 중 165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요건에 부합됨

<표 2> FY2022 vs. FY2023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위원 수 <sup>1)</sup>

구분	FY2022			FY2023			전기대비
	구분	수(명)	비중	성별	수	비중	
KOSPI 200 상장법인 감사위원 수	사외이사	565	98.9%	사외이사	572	99.0%	▲ 1.2%p
	사내이사	5	0.9%	사내이사	5	0.9%	-
	기타 비상무이사	1	0.2%	기타 비상무이사	1	0.2%	-
	소계	571	100%	소계	578	100%	▲ 1.2%p

<표 3>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구분	내용
I.1.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II.3.1 독립성	• 감사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함
IV.1.4 공정성	• 감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함

1) FY2023 반기보고서 및 FY2022 반기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3. 감사위원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감사 수행 시 지적으로 정직한 것과 타인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음
  -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 감사위원회의 정신적 독립성 및 외관상 독립성<sup>2)</sup>

구분	내용
정신적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수행 시 이해상충 상황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li> <li>• 감사인은 스스로만이 자신의 정신적 독립성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움</li> </ul>
외관상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혹은 신분상으로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로부터 감사보수 이외의 거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경제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li> <li>-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과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 경우, 신분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li> </ul> </li> </ul>

2)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무역경영사, 1995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3. 감사위원회 독립성

### 해외 감사위원회 독립성

- 미국NYSE에 상장된 기업은 Section 303A에서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규정(Corporate Governance Rule)을 준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함

<표 5> NYSE Section 303A 「Corporate Governance Rules」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이사회 멤버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이사가 독립적인지의 여부를 이사회에서 판단함</li> </ul>
이사회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개별이사의 독립성여부를 검토함</li> </ul>
주요 관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의 요건으로 비즈니스관계, 은행, 컨설팅, 법무, 회계(감사), 자선기관, 가족사항 등에서 회사와 중요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이사회에서 확인받아야 함</li> </ul>
이사회 독립성 판단근거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의 신상과 해당 사외이사가 회사와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근거를 사업보고서 또는 의결권 위임장에 공시하여야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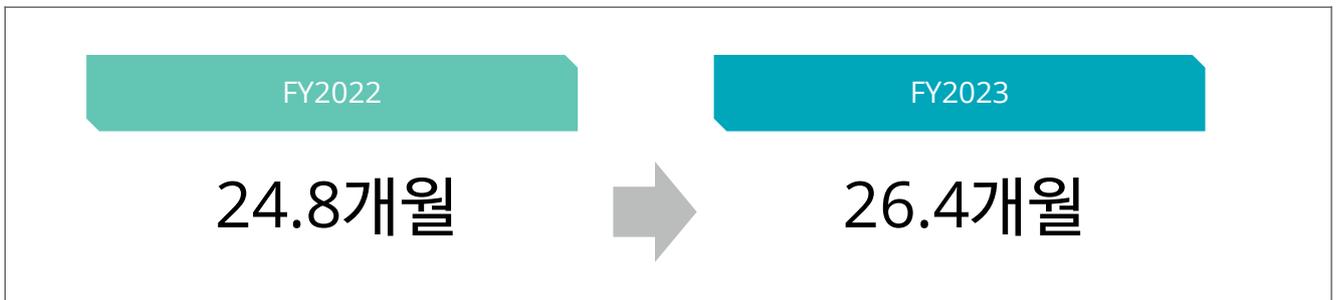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4. 감사위원회 재직기간 · 연령 · 성비

### 국내 감사위원 재직기간

-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하는데, 이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1회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sup>1)</sup>
  - 회사는 정관에 임기관련 규정이 '3년' 인 경우에는 매 이사별 3년의 임기로 선임하고, '3년 이내' 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별 임기를 달리하여 선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사외이사의 경우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으며,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함<sup>2)</sup>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의 평균 임기는 26.4개월로 전기대비 1.6개월(6.5%p) 증가함

<그림 1> FY2022-FY2023 감사위원 평균임기<sup>3)</sup>



1) 상법 제383조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제7호

3) FY2023 반기보고서 및 FY2022 반기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VIII.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4.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 국내 감사위원 연령대

- 국내 감사위원의 퇴직연령을 규정하는 법규는 없음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전기의 61.2세 대비 1.2년이 젊어졌음
  - FY2023 기준 50세 미만의 감사위원이 48명(8.3%)으로 전기대비 14명(2.4%p) 증가함
  - FY2023 기준 70세 이상의 감사위원이 39명(6.7%)으로 전기대비 22명(4.0%p) 감소함
  - FY2023 기준 60대 감사위원이 292명(50.5%), 50대 감사위원이 199명(34.4%)을 차지해 주류를 이룸

<표 1> FY2022 vs. FY2023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연령대 <sup>4)</sup>

구분	FY2022			FY2023			전기대비
	구분	수(명)	비중	구분	수(명)	비중	
KOSPI 200 상장법인 감사위원 연령대	50세 미만	34	5.9%	50세 미만	48	8.3%	▲ 2.4%p
	50-54세	65	11.4%	50-54세	74	12.8%	▲ 1.4%p
	55-59세	110	19.3%	55-59세	125	21.6%	▲ 2.3%p
	60-64세	168	29.4%	50-64세	168	29.1%	▼ 0.3%p
	65-69세	133	23.3%	65-69세	124	21.5%	▼ 1.8%p
	70세 이상	61	10.7%	70세 이상	39	6.7%	▼ 4.0%p
	소계	571	100.0%	소계	578	100.0%	-

4) FY2023 반기보고서 및 FY2022 반기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VIII.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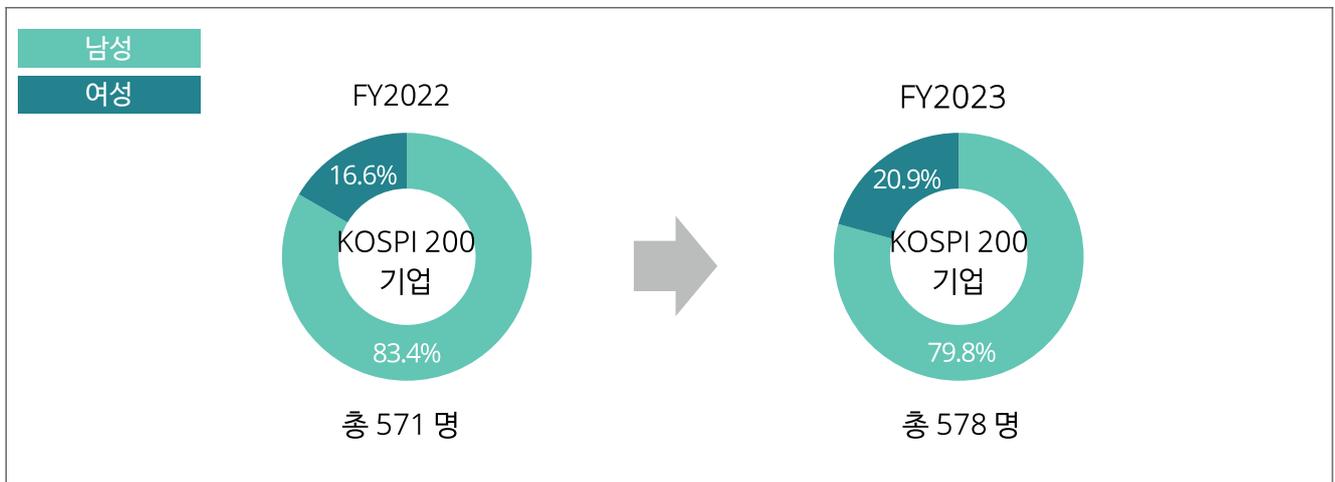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4.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 국내 감사위원 성비

- 국내 감사위원의 성비는 이사회 다양성 확보 사안과 연결됨
- 이사회에서 다양성 확보의 의미는 연령, 성별, 출신, 학력, 경험, 학력 등이 고려된 인물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임을 의미하며 실제 국내외로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현실임
- 국내는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2022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성비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sup>5)</sup>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아야 함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은 20.9%(120명)로 전기대비 4.3%p 상승함

<그림 2> FY2022 vs. FY2023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성비구성<sup>6)</sup>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6) FY2023 반기보고서 및 FY2022 반기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VIII.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4.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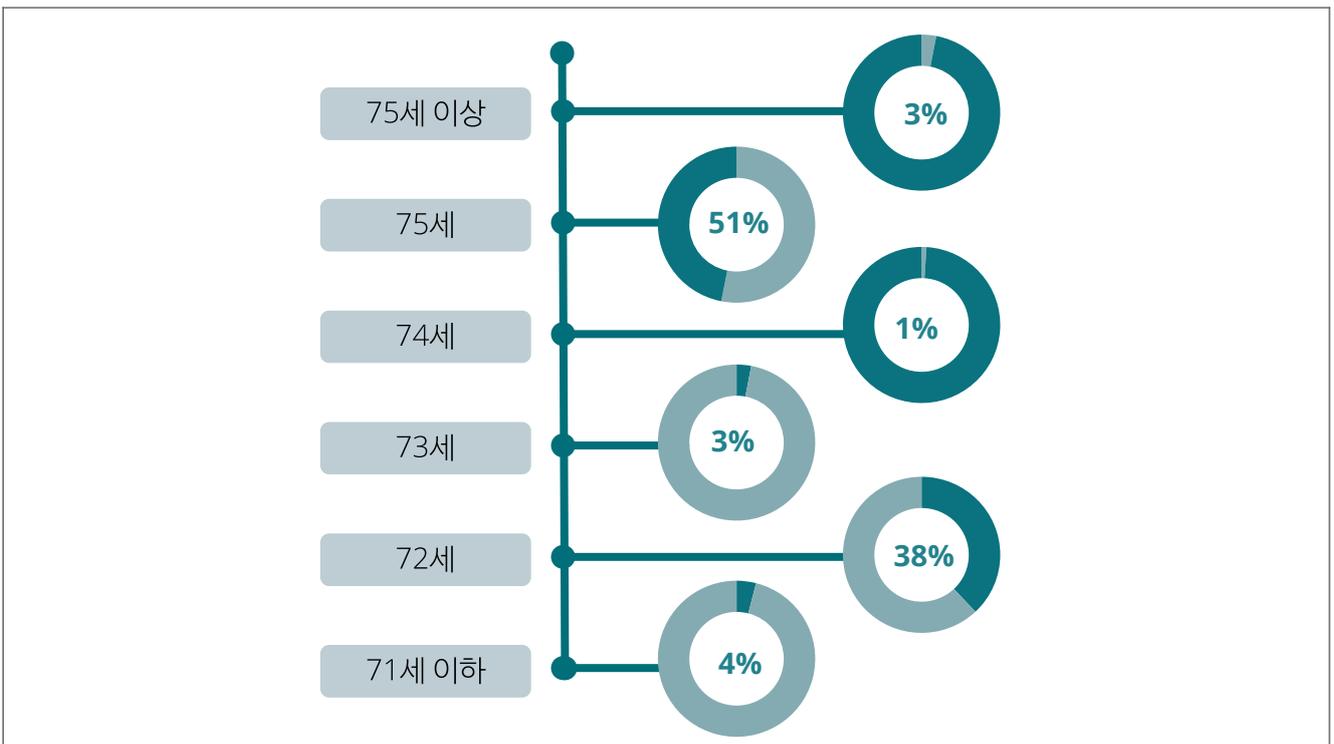
### 글로벌 감사위원 재직기간·연령

-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포함) 응답자의 94%는 재직 연수 및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기준 임기에 대한 연령제한(86%)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평균 퇴임 연령은 75세(51%)로 나타났는데, 임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국내 환경과는 다른 사항으로 파악됨 <sup>7)</sup>
- 2023년 글로벌 이사회 멤버의 평균 연령은 63.3세로 나타남 <sup>8)</sup>

<표 2> 이사회 멤버 임기 관련 규정 보유 여부 <sup>9)</sup>

구분	응답비율 (중복응답 포함)
연령제한	86%
임기/연령/기타 제한 정책에 예외사항 기술	67%
임기제한	8%
이사회 멤버 기타 임기조건 및 제한사항	8%
임기/연령/기타제한 정책에 대한 예외사항 미기술	6%
평균임기	3%

<그림 3> 이사회 규정상 이사진 퇴임 연령 분포 <sup>10)</sup>



7,9,10)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Back to basics: Board composition and refreshment」, 2023.01

8) Spencer Stuart, 「Board Index 38th editio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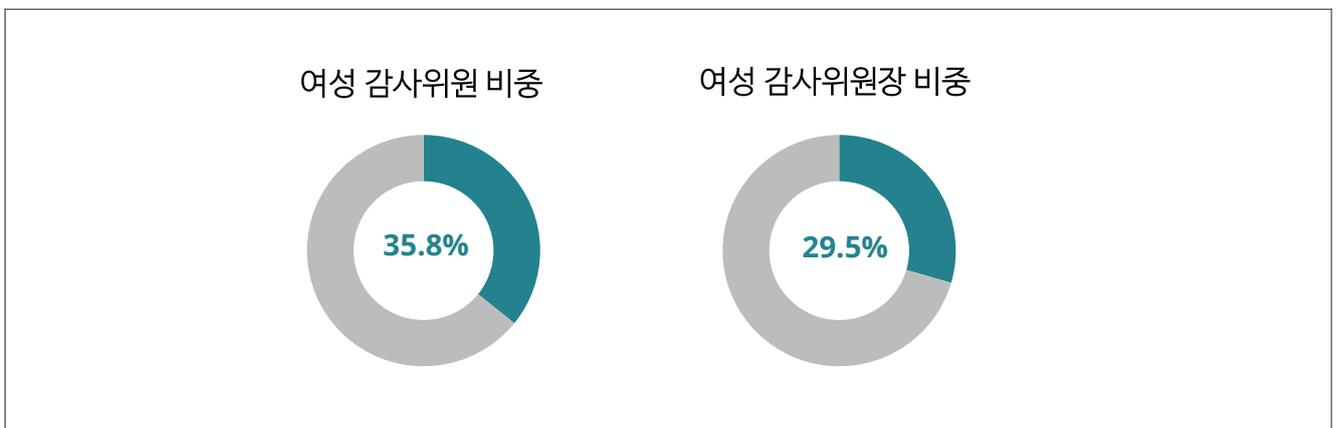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4. 감사위원회 재직기간 · 연령 · 성비

### 글로벌 Fortune 500 기업 여성 감사위원 비중

- 글로벌 Fortune 500 기업 감사위원회에서 여성 감사위원은 35.8%, 여성 감사위원장은 29.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 Fortune 500 기업 이사회내 여성 임원 비중 추이 <sup>11)</sup>



-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포함)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sup>12)</sup>에 잠정적으로 합의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최소 33%는 과소 대표되는 성별이어야 함을 명시함
- 미국의 경우 Regulation S-K에서 기업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선임하는 경우 다양성 정책과 그 평가에 관해 공시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11)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Missing Pieces Report: A board diversity census of women and underrepresented racial and ethnic groups on Fortune 500 boards, 7th edition」, 2023.06

12) European Organization of Military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EUROMIL),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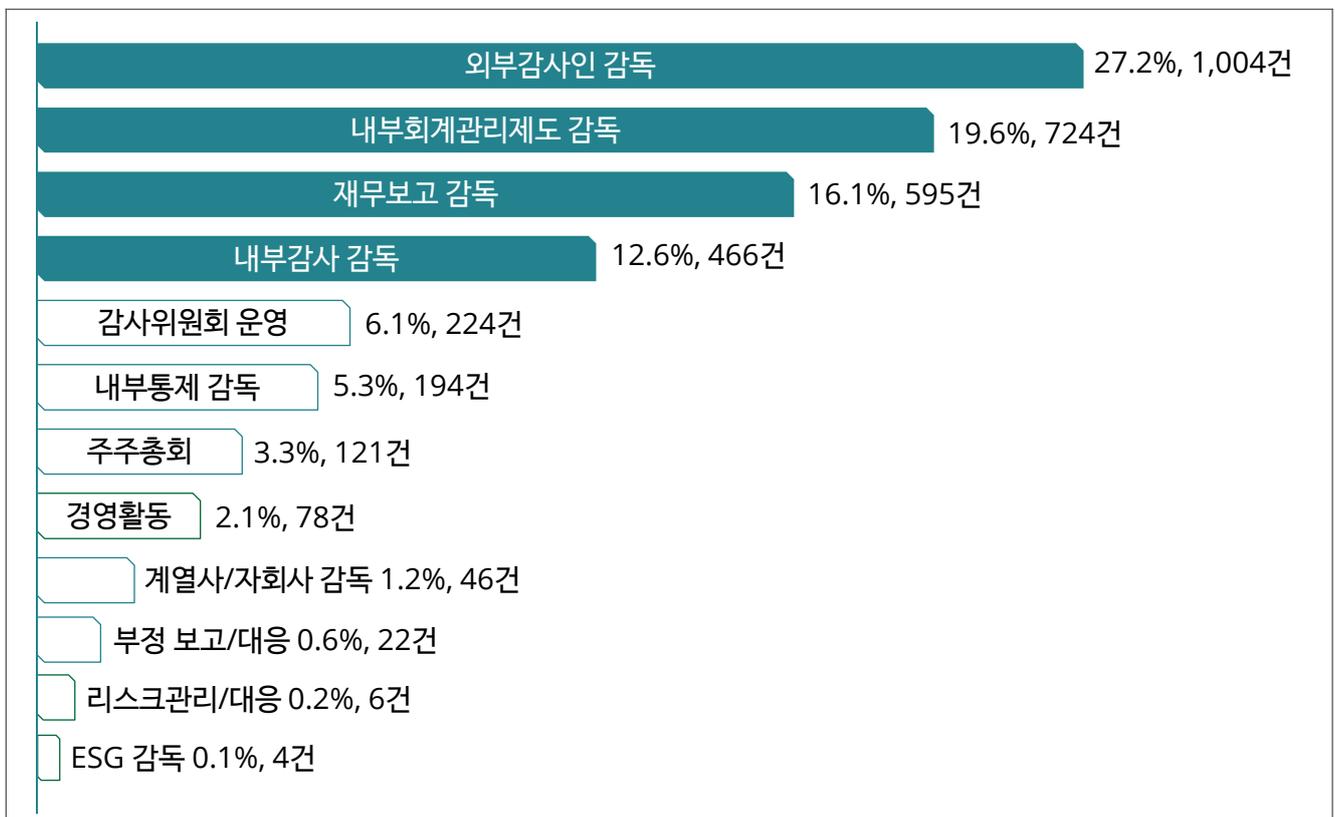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5. 감사위원회 안건 · 찬성률

###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 감사위원회의 안건은 기업의 주요 업무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안건의 특성에 따라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및 필요 시 다루는 안건으로 구성됨
  - 안건 검토는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임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은 총 3,692 건임
  - 감사위원회의 상위 안건 비중은 '외부감사인 감독'(1,004건, 27.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724건, 19.6%), '재무보고 감독'(595건, 16.1%) 및 '내부감사 감독'(466건, 12.6%) 순으로 나타났음
  - 부정 보고/대응 안건 비중은 0.6%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 수립 및 운영이 강조됨
  -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비중도 0.1%(4건)로 매우 낮은 비중임

<그림 1> FY2022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분류 <sup>1)</sup>



1) KOSPI 200 기업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총 3,692 안건으로 집계됨. 기타 분류 통계는 그림에서 제외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5. 감사위원회 안건 · 찬성률

###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찬성률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총 3,692건이며 의결안건 1,204건, 보고안건 2,488건으로 집계됨
  - FY2022 의결안건 중 감사위원의 찬성률 평균은 99.9%로 나타났으며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함
    - A사: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 총 4명의 감사위원 중 1명 반대로 안건 승인
    - B사: 세무용역에 대한 비감사업무용역 검토 및 승인 안건 : 총 3명의 감사위원 중 3명 반대로 안건 부결
  - FY2021 의결안건 중 감사위원의 찬성률 평균도 99.9%로 나타났으며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함
    - C사: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소제기 여부 결정의 건 : 총 3명의 감사위원 중 3명 반대로 안건 부결

<그림 2> FY2021 vs. FY2022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 안건 찬성률<sup>2)</sup>



2) KOSPI 200 기업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5. 감사위원회 안건 · 찬성률

### 글로벌 감사위원회 아젠다

- 2023년 기준, 미국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및 내부통제 감독은 감사위원회에게 최우선시 되는 감독책임 영역으로 조사됨
  - 인지하고 있는 주요 감독 책임 영역은 재무보고 감독·내부통제 감독 (94%)과 부정리스크 감독 (84%)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 2022년-2023년 미국 감사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감독 책임 영역



3)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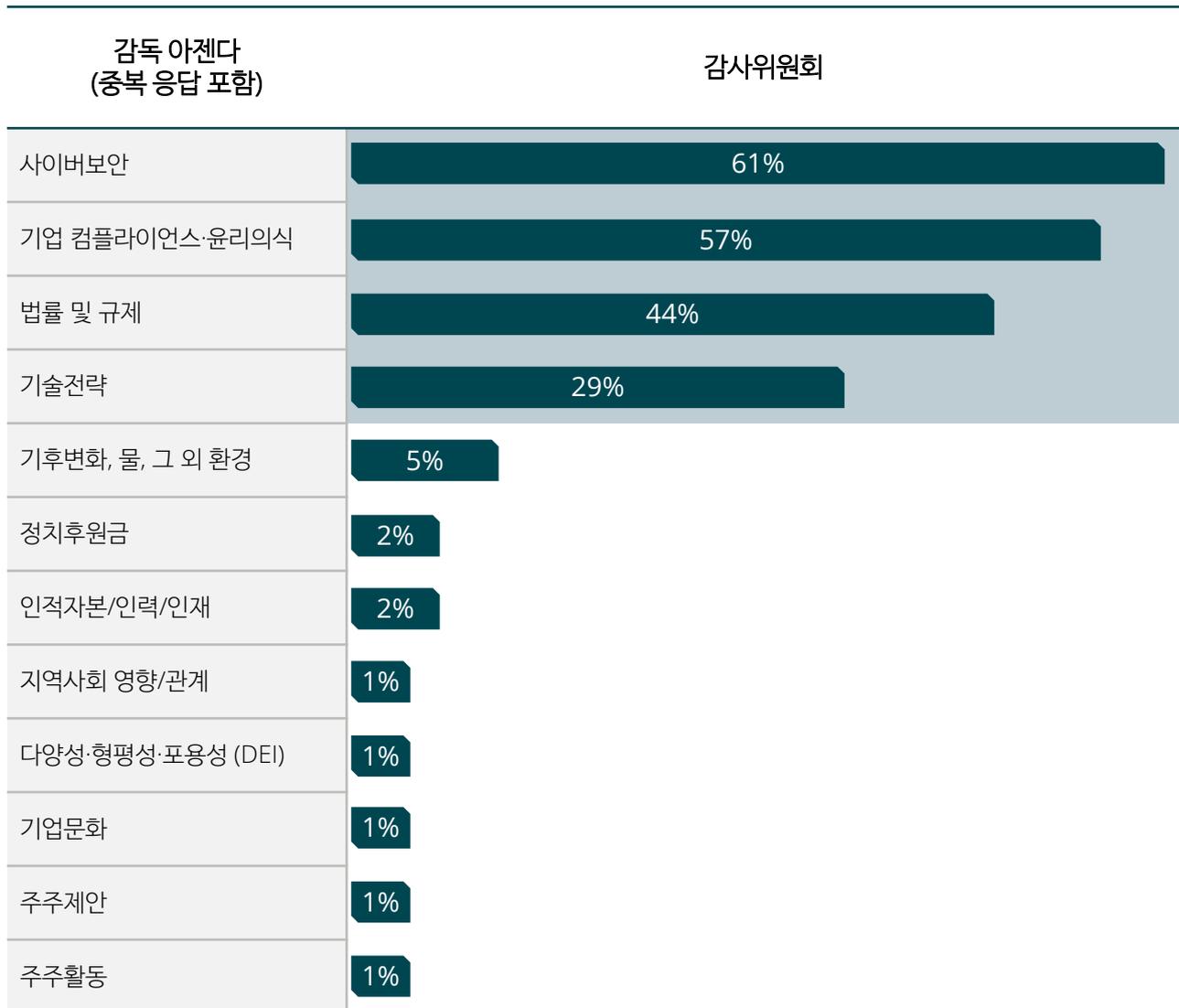
4)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 2022.08.~10.에 조사된 대규모 미국 기반 상장사(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감사위원 164명 대상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5. 감사위원회 안건 · 찬성률

- 미국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보고 감독 이외에 재무 리스크를 포함,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주 담당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4> 글로벌 감사위원회 담당 아젠다 (재무보고 감독 이외)<sup>5)</sup>



5)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Back to basics: Board committees」, 2022.06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6. 감사위원회 회의

### 국내 감사위원회 회의

-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임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져야 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아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완수하기에 충분하도록 최소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가 권장되며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 내 다른 회의일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필요 시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경영진, 기타 이사회 구성원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의 다수결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함 (제392조의2 제5항, 제391조의 제1항)
  -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가능함
  -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는데(제415조의2 제6항) 이는 이사회결의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안건,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위원별로 의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참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표 1> 지배구조 모범기준 상 '감사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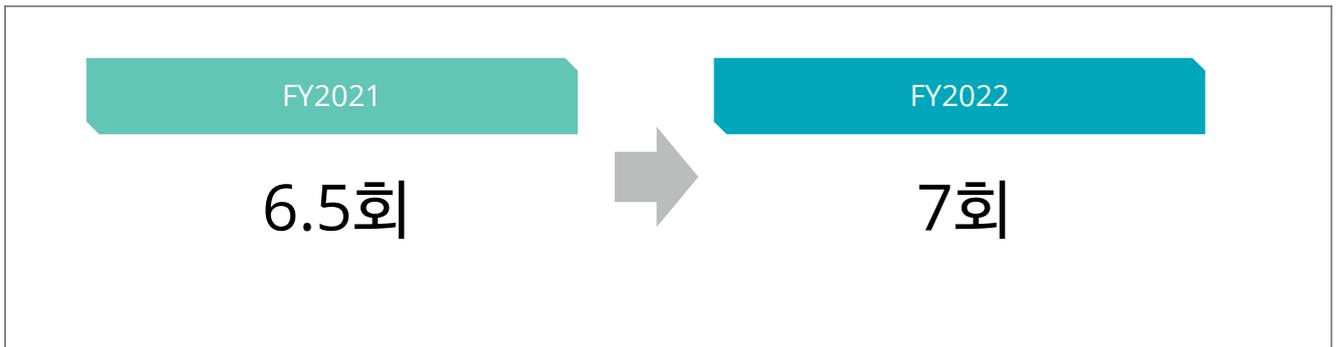
구분	설명
지배구조 모범기준 IV.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li> <li>• 필요 시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li> </ul>
지배구조 모범기준 IV.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li> <li>• 감사(위원회)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해야 함</li> </ul>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6. 감사위원회 회의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는 7회로 전기대비 0.5회 증가함

<그림 1>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횟수 <sup>1)</sup>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95.4%는 연간 4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함
  - 연평균 기업별 평균적으로 21.3개의 안건을 처리함

<표 2> FY2022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분포 <sup>2)</sup>

연간 회의 개최 횟수	기업 수	비중
1회	1	0.6%
2회	4	2.3%
3회	3	1.7%
4회	12	6.9%
5회	29	16.8%
6회	45	26.0%
7회	30	17.3%
8회	10	5.8%
9회	11	6.4%
10회	6	3.5%
11회	7	4.0%
12회	3	1.7%
13회	5	2.9%
14회	2	1.2%
15회	1	0.6%
16회	1	0.6%
17회	-	0.0%
18회	3	1.7%
소계	173	100%

1) KOSPI 200 기업 FY2022 사업보고서 및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2) KOSPI 200 기업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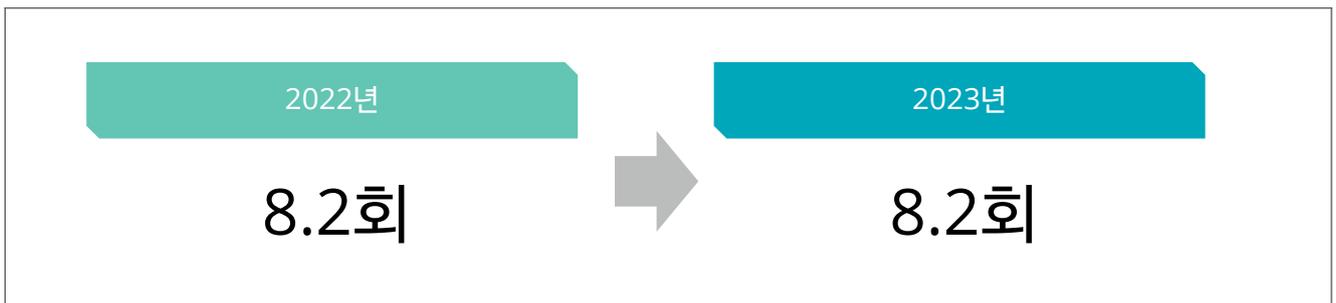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6. 감사위원회 회의

### 글로벌 감사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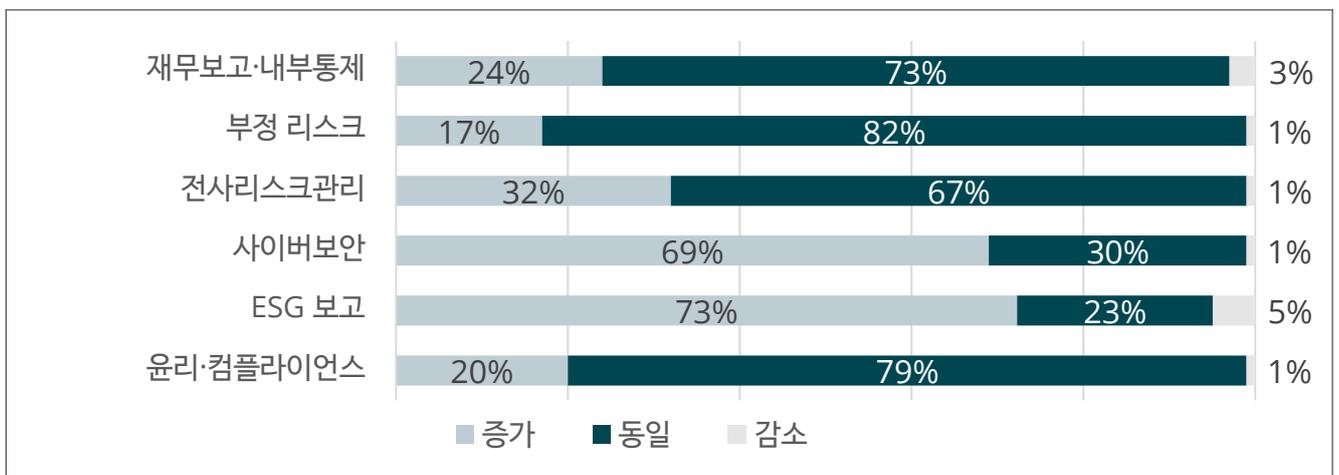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8.2회로 나타남
- 글로벌 감사위원의 63%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방문, 비공식 회의 등의 다양한 회의 이외의 활동을 국내 대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sup>3)</sup>
  - 감사위원회는 최고경영진,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주기적인 비공식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식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사업장에 방문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상황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음

<그림 2> 글로벌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횟수 추이<sup>4)</sup>



- 성실한 감사위원회 회의의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투입시간의 예상정도는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감사위원이 대부분이었음

<그림 3> 전년대비 예상되는 감사위원회 감독 투입시간 정도<sup>5)</sup>



3,5)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4) Spencer Stuart, 「Board Index 38th edition」, 2023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7. 감사위원 전문성

### 국내 감사위원 전문성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1)</sup>,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아래의 <표1>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사업보고서 상에서 관련 전문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표 1> 상법 상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요건

구분	상법 해당 조문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1.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 FY2023 기준 감사위원의 주요 전문성 분포를 보면 '재무 또는 회계'(42.4%, 245명), '학계'(18.2%, 105명) 및 '법률'(16.8%, 97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표 2> FY2022-FY2023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전문성 분포 <sup>2)</sup>

전문성 구분	FY2022		FY2023		전기대비
	수(명)	비중(%)	수(명)	비중(%)	
재무 또는 회계	237	41.5%	245	42.4%	▲ 0.9%p
학계	129	22.6%	105	18.2%	▼ 4.4%p
법률	100	17.5%	97	16.8%	▼ 0.7%p
재계	50	8.8%	60	10.4%	▲ 1.6%p
관료	22	3.9%	44	7.6%	▲ 3.7%p
언론/홍보	8	1.4%	8	1.4%	-
기타	25	4.4%	19	3.3%	▼ 1.1%p
소계	571	100%	578	100.0%	

1)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2) KOSPI 200 기업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학계' 분류의 경우 '재무 또는 회계' 출신 인물은 제외하고 산정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7. 감사위원 전문성

- FY2023 기준 상법에서 구분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유형에 따라 나뉘보면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39.6%, 97명)와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33.9%, 83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표 3> FY2022-FY2023 KOSPI 200 기업의 상법에서 구분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유형<sup>3,4)</sup>

전문성 구분	FY2022		FY2023		전기대비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호 유형 - 공인회계사	51	21.5%	54	22.0%	▲ 0.5%p
2호 유형 -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	92	38.8%	97	39.6%	▲ 0.8%p
3호 유형 -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	12	5.1%	11	4.5%	▼ 0.6%p
4호 유형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82	34.6%	83	33.9%	▼ 0.7%p
소계	237	100%	245	100%	-

3)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른 구분

4) KOSPI 200 기업 FY2022 사업보고서 및 FY2023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회계' 분류의 경우 '재무 또는 회계' 출신 인물은 제외하고 산정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7. 감사위원 전문성

### 글로벌 감사위원 전문성

- 미국의 경우 사베인스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SOX'), NYSE 상장규정, NASDAQ 상장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SEC는 상장법인이 감사위원회에 최소 1명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였는지 여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재무전문가의 이름과 회사의 독립성 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표 4> 미국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세부 요건

구분	설명
SOX <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및 GAAP<sup>6)</sup>에 대한 이해</li> <li>• 비교가능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또는 감사 경험</li> <li>• 회계추정, 발생, 총당금 관련 GAAP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li> <li>•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경력</li> <li>•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li> </ul>
NYSE 상장규정 <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감사위원이 재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후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그 능력을 갖추는 것</li> <li>•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은 '회계 또는 관련 재무관리 전문성(accounting or related financial management expertise)'을 갖추는 것</li> </ul>
NASDAQ 상장규정 <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감사위원이 임명된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li> <li>• 최소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성은 재무나 회계분야의 근무 경험, 회계분야의 전문자격증 또는 재무업무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험(CEO, CFO 등)을 통해 습득 가능</li> </ul>

-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그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나 회계기준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함
- 많은 이사회는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승계계획에서 회계 및 재무전문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기초를 설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회사 및 해당 산업, 규제 환경, 회계 및 보고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sup>9)</sup>

5) SOX 제407조

6)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7) 303A.07.(a)

8) Rule IM-5605-3.(2)(A)

9) 딜로이트 글로벌,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2021 Framework",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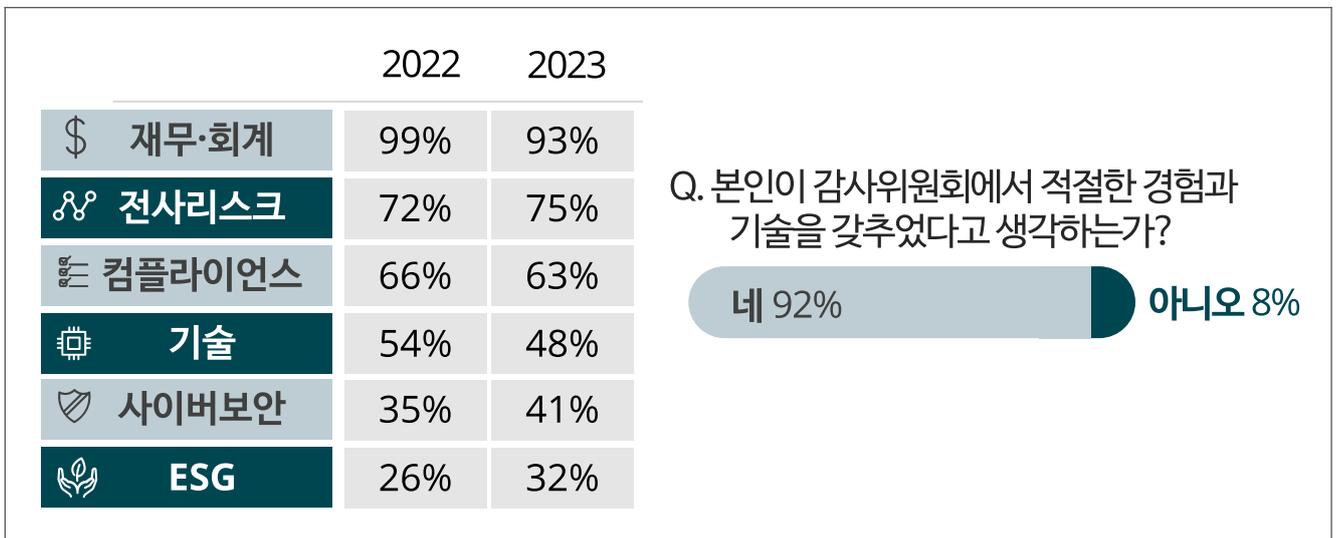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7. 감사위원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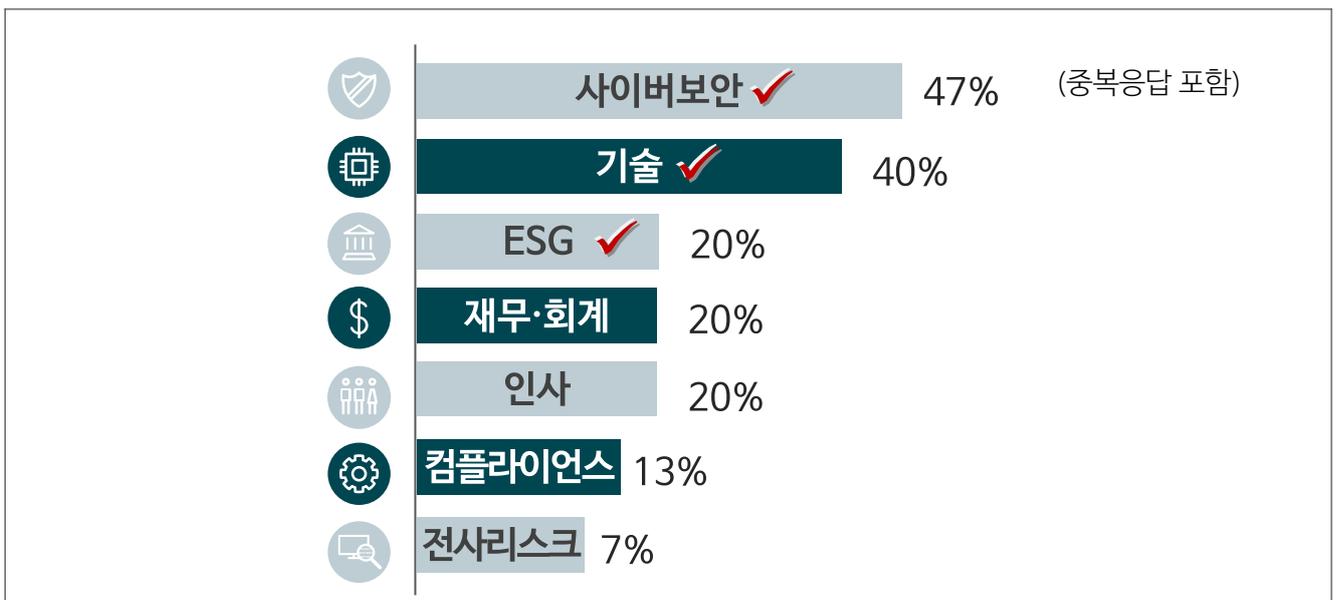
□ 기존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핵심 감독 영역에 대한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은 갖춰져 있는 반면, 기술, 사이버보안 및 ESG 관련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나 전기대비 사이버보안, ESG, 전사리스크의 전문성은 보완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신흥 리스크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사이버보안, 기술, ESG 영역의 전문성 확보 수요가 증가함

<그림 1> 글로벌 감사위원회 전문성 보유 현황<sup>10)</sup>



<그림 2>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sup>11)</sup>



10)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 2022.08.~10.에 조사된 대규모 미국 기반 상장사(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감사위원 164명 대상

11)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sup>1)</sup>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감사 프로세스는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의 3단계로 진행됨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견, 대표자는 운영현황 및 실태보고와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함
- 외부감사인이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4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5사,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24사로 의견불일치가 나타나며, 경영진 비적정의견 기업은 전기대비 6사(8.2%p)가 증가하고,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전기대비 11사(14.8%p)가 증가함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후 경영진은 자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더욱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포함할 공시 내용

보고자	보고서 상 포함 내용	공시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의견 회사수	
			FY2021	FY2022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 설계와 운영</li> <li>• 상시적·정기적 점검체계</li> <li>• 효과성 점검의 객관적 지표</li> <li>• 최종의견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태보고서</li> <li>• 규정과 조직 및 인력사항</li> </ul>	9 (9.6%)	15 (17.8%)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여부 확인</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평가</li> <li>• 운영실태보고의 기준·절차 준수여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태평가보고서</li> </ul>	13 (13.8%)	24 (28.6%)
외부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또는 검토의견</li> </ul>	94 (100%)	84 (100%)

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2021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이 마련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가 강화될 예정임<sup>2)</sup>
  - 현행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평가보고서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안)

구분	내용
운영실태보고서	• 경영진이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기재하는 공시서식 마련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외에,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을 기재하는 공시서식 마련

-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이관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24.1.1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보고 수행 가능함

2)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11.15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그림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 (생략) ...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붙임)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구분 <sup>*1</sup>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 <sup>*2</sup>	평가 대상 여부 <sup>*3</sup>	테스트 수행 내역 <sup>*4</sup> (수행부서·시기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평가 관련 (부정에 대한 유인과 압력, 실행 기회, 합리화에 대한 평가 등)			
자금통제 (입출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등)			
자금통제 (기타- 재고자산, 법인카드, 금융상품, IT통제 등 관련)			
기타			

20××년 × 월 × 일  
대 표 이 사 × × × (인)  
내부회계관리자 × × × (인)

\*1)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통제의 항목 구분을 예시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음  
 \*2) 회사가 설계한 통제활동에 대해 기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표기  
 \*4) 해당 통제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수행 내역을 기술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그림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예시(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생략)…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 권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구분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sup>*1</sup>
경영진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등)			
외부감사인			

20××년 ×월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1) 이전연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시정계획의 이행결과 검토, 자금관련 부정위험 통제를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경영진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내역 차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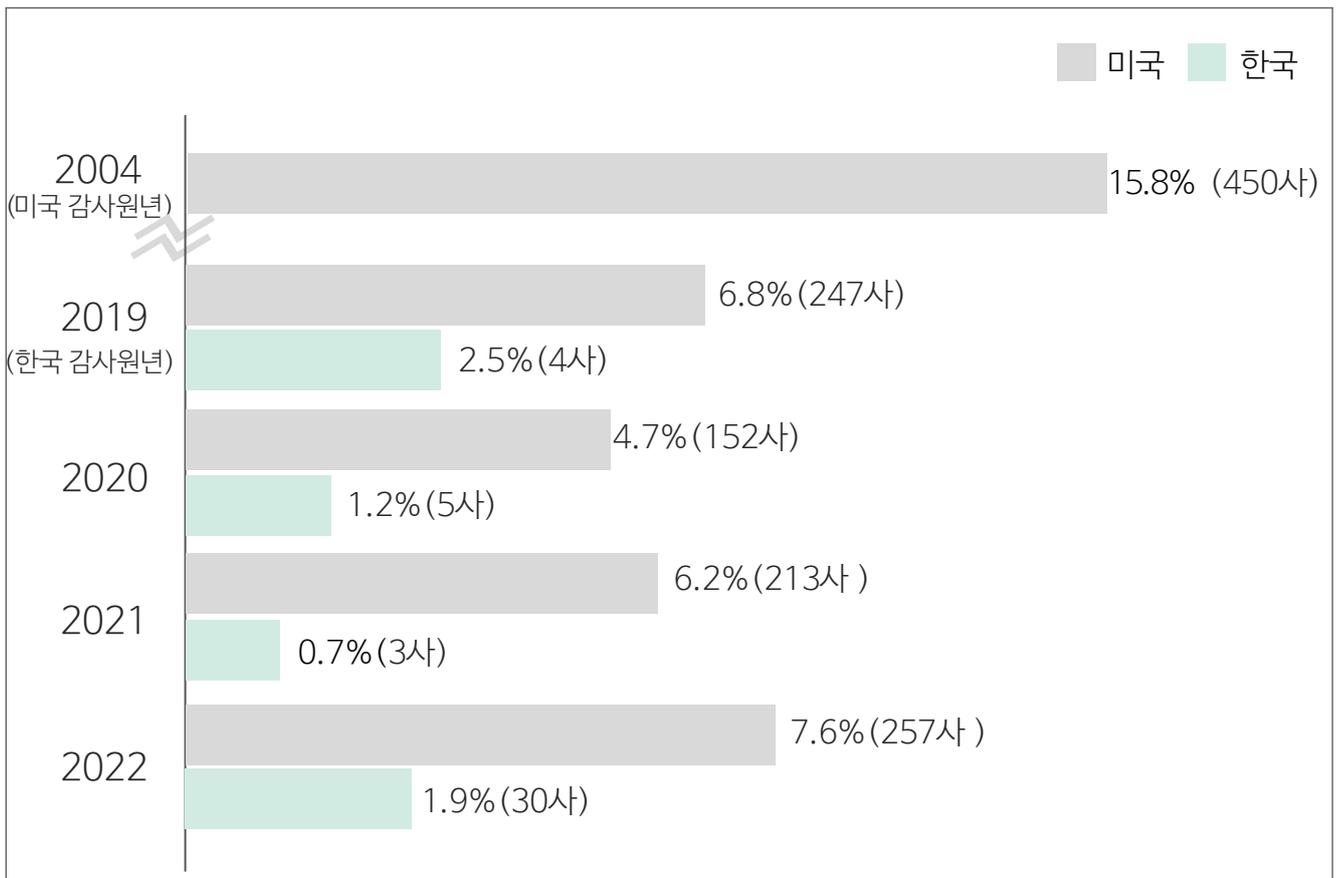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현황 비교

-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SOX 감사 실시 이래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임
  - 국내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적정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올해부터 자산총액별 순차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보다 면밀한 준비가 요구됨
    - 국내는 2022년 감사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상장법인으로 확대된 것도 비적정 의견이 증가한 사유 중 하나임

<그림 3>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 의견 비율<sup>3,4,5)</sup>



3) 금융감독원,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2021.9.24

4)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nineteen-year review」, 2023.08

5)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 2,427사의 FY2022 감사보고서 분석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sup>6)</sup> 감사 미비점 유형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보기술통제 미비 및 업무분장 미흡 등 내부통제 원칙 관련 사유의 비중이 높지만, 국내의 경우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및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 사유가 대다수로 나타남
  - 국내는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5.8%)가 비적정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폐쇄적인 투자 의사결정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회계처리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자금 통제 미비(10.4%)도 비적정 주요 사유로 자금통제활동 설계여부 확인 또는 기 설계된 자금통제 활동이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 미국은 주요 비적정 사유로 '정보기술통제(44.2%)', '업무분장의 미흡(34.5%)'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23.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내 현황과 차이가 있음
    - 주요 비적정 사유로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48.7%)' 비중은 국내와 유사한 현황을 보여줌

<그림 4>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 의견 비율

 미국 (중복응답 포함)	1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	67.6%
	2 업무분장 미흡	57.8%
	3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	35.8%
	4 정보기술통제(ITGC) 미비	22.4%
	5 불규칙한 거래패턴	16.7%
 국내	1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25.8%
	2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	16.8%
	3 범위 제한	15.8%
	4 자금 통제 미비	10.4%
	5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	7.5%

6) 미국은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내부통제)를 수행함

7)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nineteen-year review」, 2023.08

8)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 2,427사의 FY2022 감사보고서 분석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9. 내부감사부서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sup>1)</sup>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함
  - 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국제내부감사기준<sup>2)</sup>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독립성임
-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 인사권, 성과평가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및 지배구조 모범기준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함
  -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표 1>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 관련 국내 모범기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p>(Ⅳ.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Ⅳ.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p>
지배구조 모범기준	<p>(Ⅳ.1.4)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생략)...</p> <p>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주요 업무 7: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1) 업무감사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경영진 및 경영진 산하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수적임

2) IIA, 「국제내부감사기준」, 2017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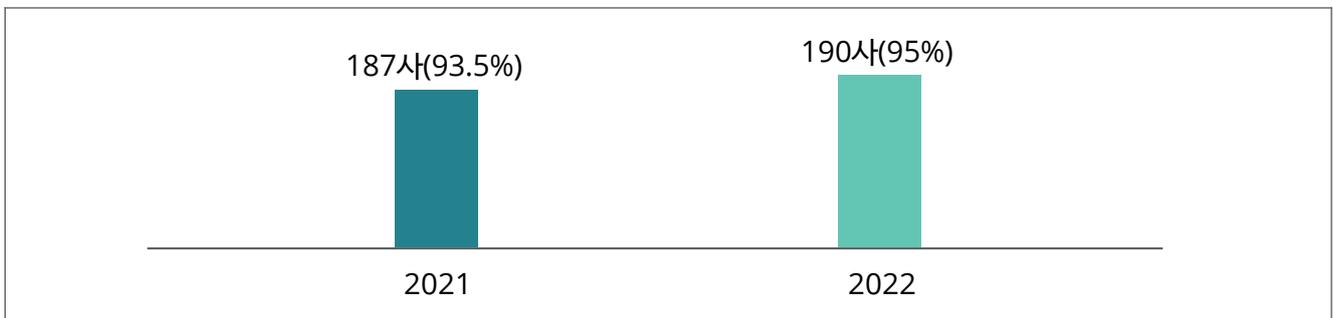
## 9. 내부감사부서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

#### 1) 내부감사부서 설치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90사(95%)로 전기 대비(187사) 1.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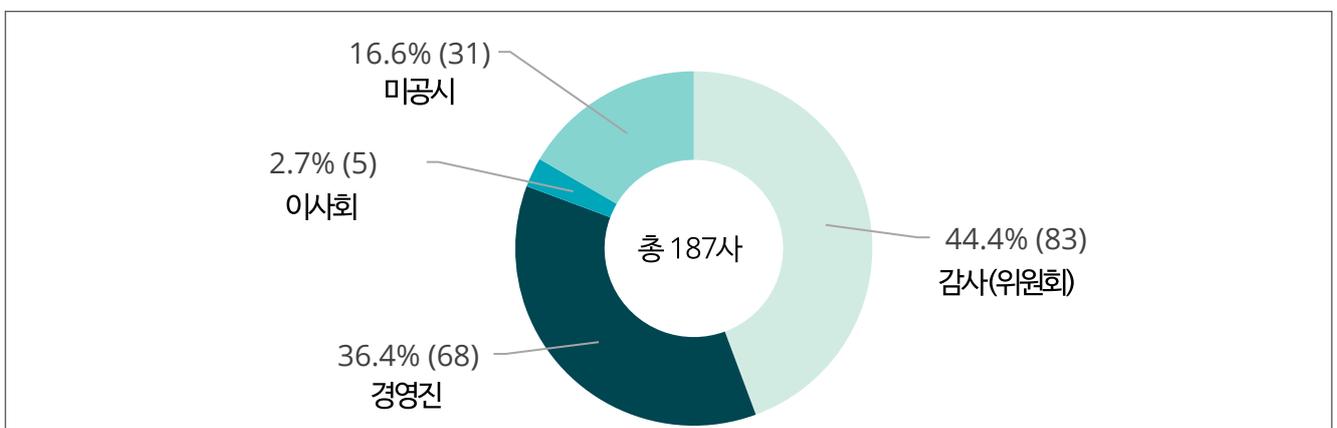
<그림 1> FY2022 vs. FY2021 KOSPI 200 기업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수<sup>3)</sup>



#### 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95%) 중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81사(42.6%)로 전기 대비(83사) 1.8%p 감소하였고,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는 109사(57.4%)로 전기 대비(104사) 1.8%p 증가함<sup>4)</sup>
  -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73사(38.4%)로 전기 대비(68사) 2.1%p 증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 FY20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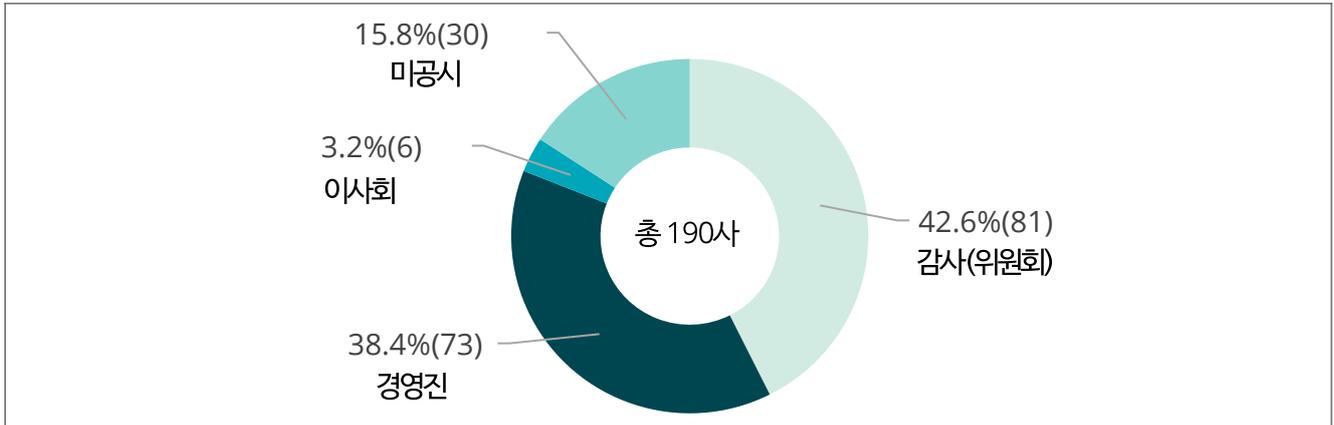
3,5)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4)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 여부를 조직도나 관련 문구만으로 판단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9. 내부감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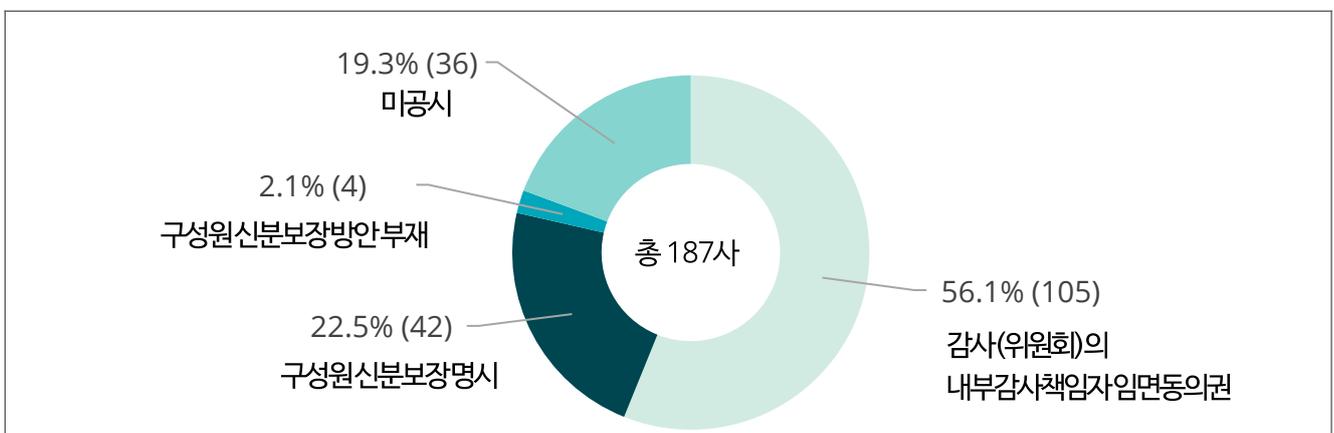
<그림 3> FY202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sup>6)</sup>



### 3)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sup>7)</sup>을 갖는 기업은 109사(57.4%)로 전기대비 1.3%p 상승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내부감사 직무 수행에 관하여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기업은 44사(23.2%)로 전기대비(42사) 0.7%p 상승함
  - 반면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보장 방안이 없다고 명시(2사, 1.1%)한 기업은 전기대비(4사) 1.0%p 감소하였고, 미공시(35사, 18.4%) 기업도 전기대비(36사, 19.3%) 0.9%p 감소함

<그림 4> FY2021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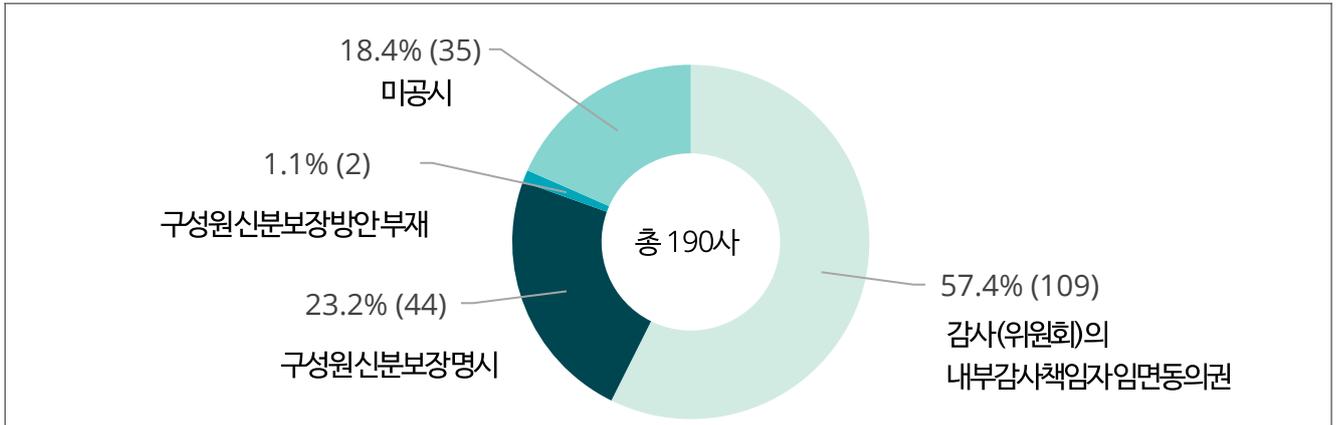
6,8)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7)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시 동의 또는 협의 권한 보유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9. 내부감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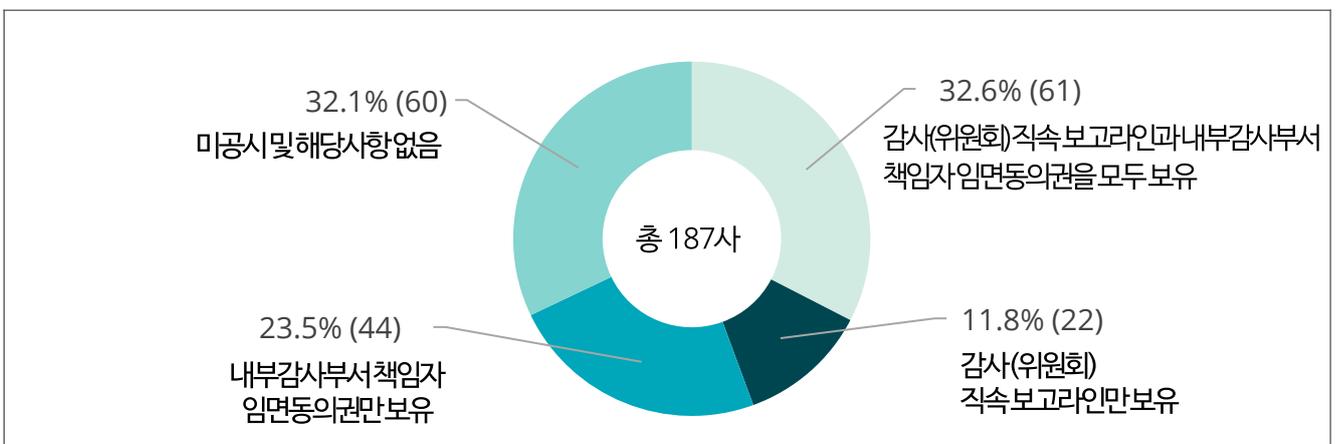
<그림 5> FY2022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sup>9)</sup>



### 4)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의 동시 보유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곳은 61사(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기대비(61사) 0.5%p 감소한 수치로 변화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아직 국내 내부감사부서는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림 6> FY20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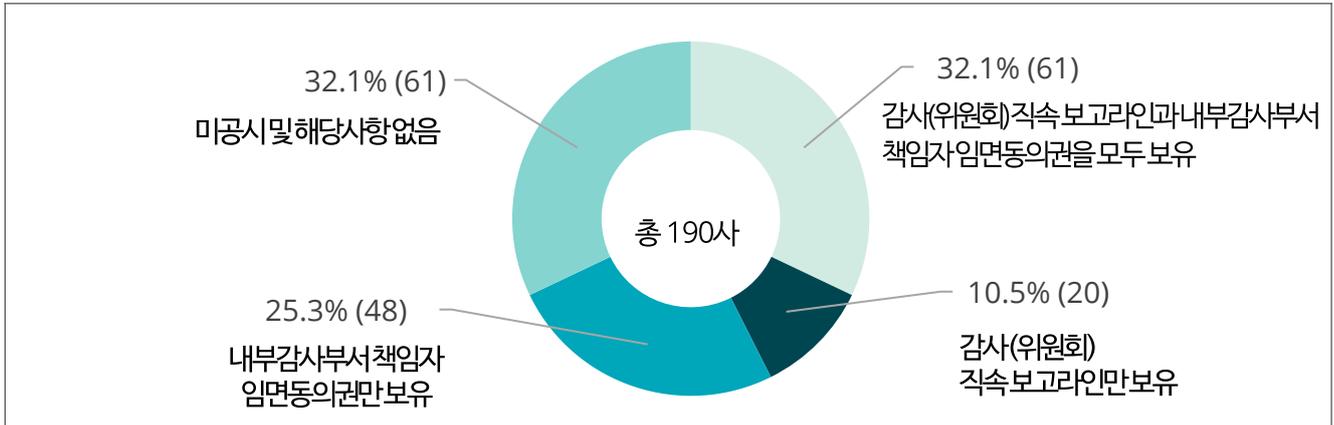


9,10)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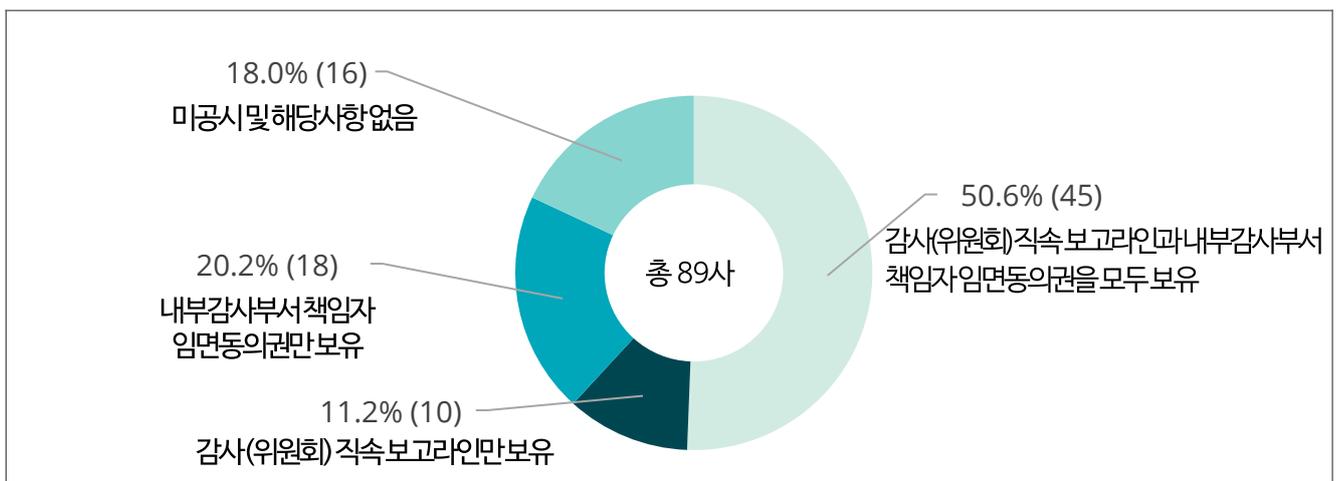
## 9. 내부감사부서

<그림 7> FY202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sup>11)</sup>



- 한편,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53.9%) 약 1.6%p 감소함<sup>12)</sup>
-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절반(44사, 50%)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기대비(45사) 0.6%p 감소한 수치임

<그림 8> FY20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독립성 확보 현황<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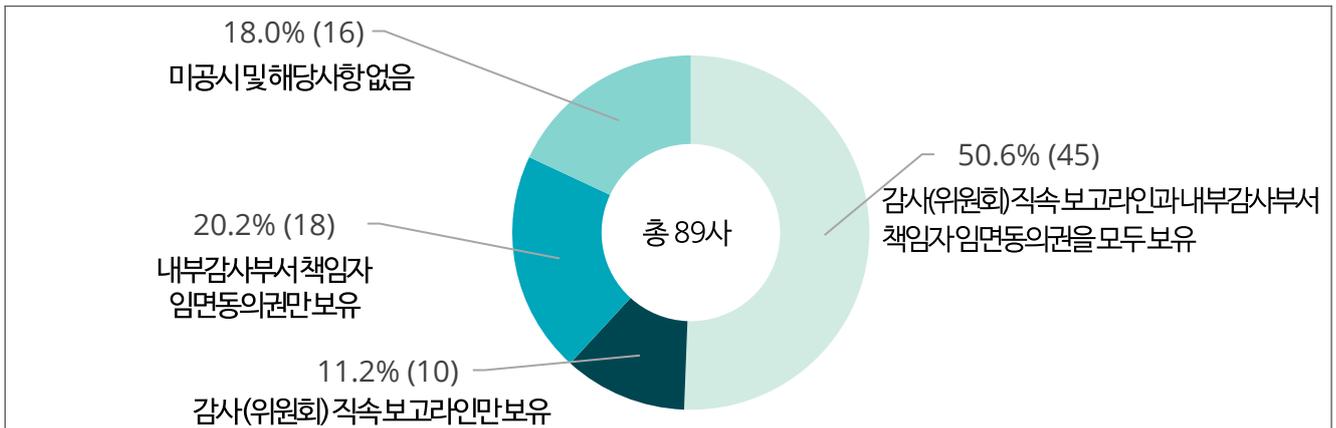
11,13)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12)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의무공시한 168사(FY2021는 165사)를 기준으로 설정함. 금융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나 해당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9. 내부감사부서

<그림 9> FY20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독립성 확보 현황<sup>14)</sup>



- 결과적으로 FY2021-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93.5%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확보 현황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보유 현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 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공시하여도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부서로 보기 어려움

14)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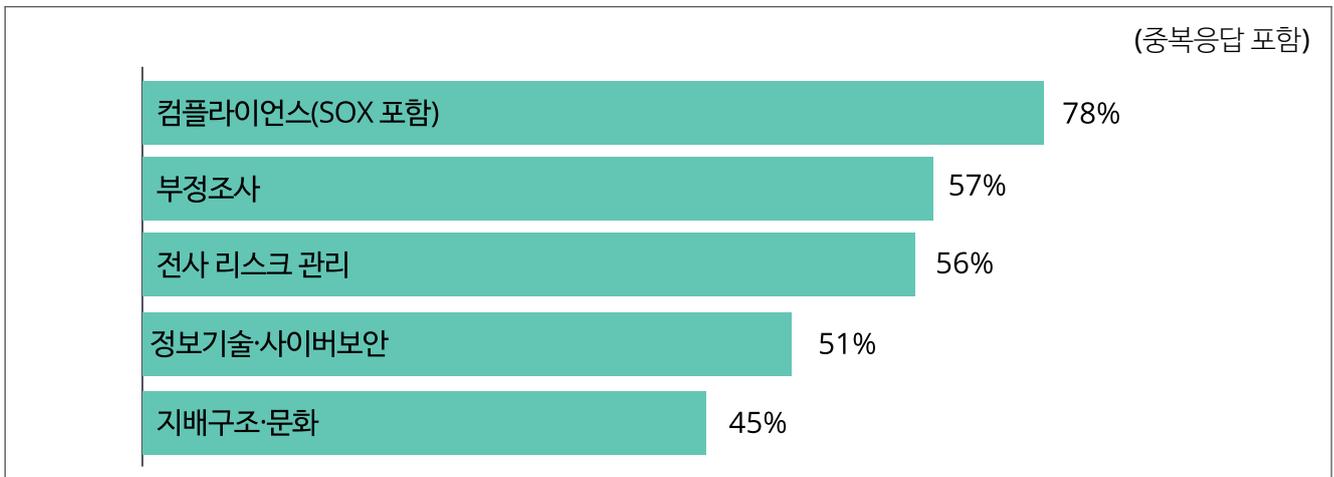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9. 내부감사부서

### 글로벌 내부감사부서

- 글로벌 내부감사부서의 가장 중요한 내부감사 활동은 SOX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부정, 전사 리스크 관리 및 정보기술 등으로 언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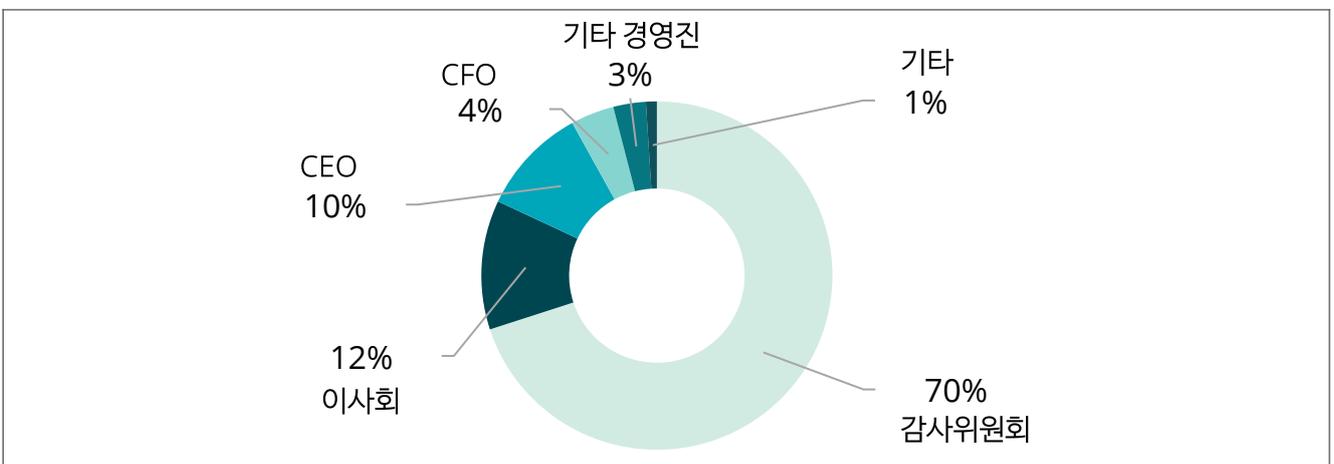
<그림 10> 글로벌 내부감사부서의 주요활동영역<sup>15)</sup>



- 글로벌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적 보고라인을 살펴보면, 북미의 경우 약 70%가 감사위원회 보고라인을 확보하고 있음

- IIA 국제내부감사기준에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중 보고라인을 권고하는데, 이는 기능적 보고를 통해 내부감사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며, 행정적 보고를 통해 관리행정 등의 사안은 경영진에 보고하여 일상적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요지임

<그림 11> 글로벌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적 보고라인<sup>16)</sup>



15,16)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2 Premier Global Research, Internal Audit: A Global View」, 2022, 북미 5개국 내부감사인 1,152명 대상 서베이 조사 결과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배석 없는 대면회의를 권고함
  - 재무보고 과정 전반에 감독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고 개방적인 소통체계를 갖추어야함

<표 1>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모범규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li> </ul>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li> </ul>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따라 관련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임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5-2-1-①-4)에 따라 사업보고서(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주요 논의내용, 방식, 참석자, 일자를 공시해야 함
  - '22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항목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사항 주요미흡사례로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사이에 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재 누락이 있음<sup>1)</sup>

<표 2>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간 주요 논의 내용 예시<sup>2)</sup>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 또는 감사 보수, 시간 및 필요한 인력에 관한 논의</li> <li>• 계획된 검토 또는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li> <li>• 부정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 감시기능에 대한 논의</li> <li>• 검토 또는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li> <li>•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관련 논의</li> <li>• 검토 또는 감사시 미수정 왜곡표시 및 후속사건 관련 논의</li> <li>• 검토 또는 감사의견의 변형 가능성 관련 논의 등</li> </ul>

1)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 2023.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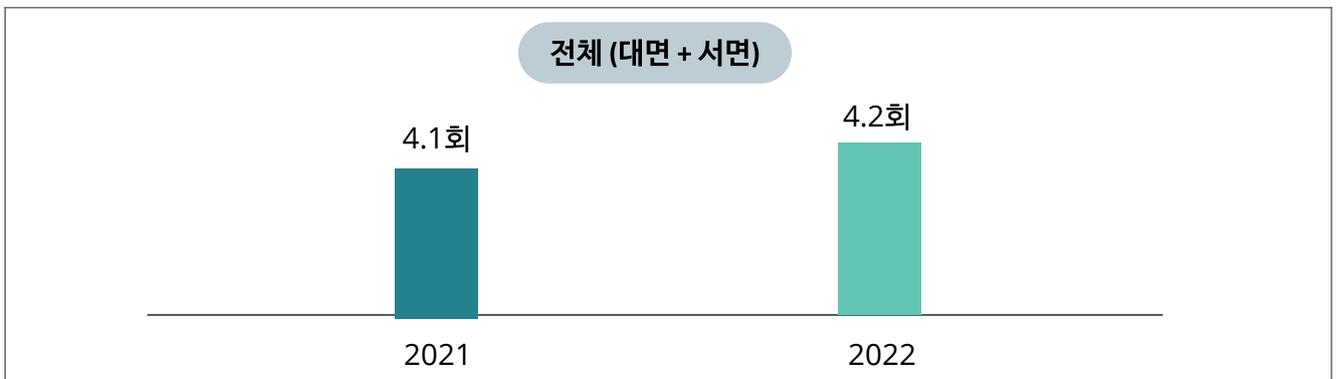
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3.06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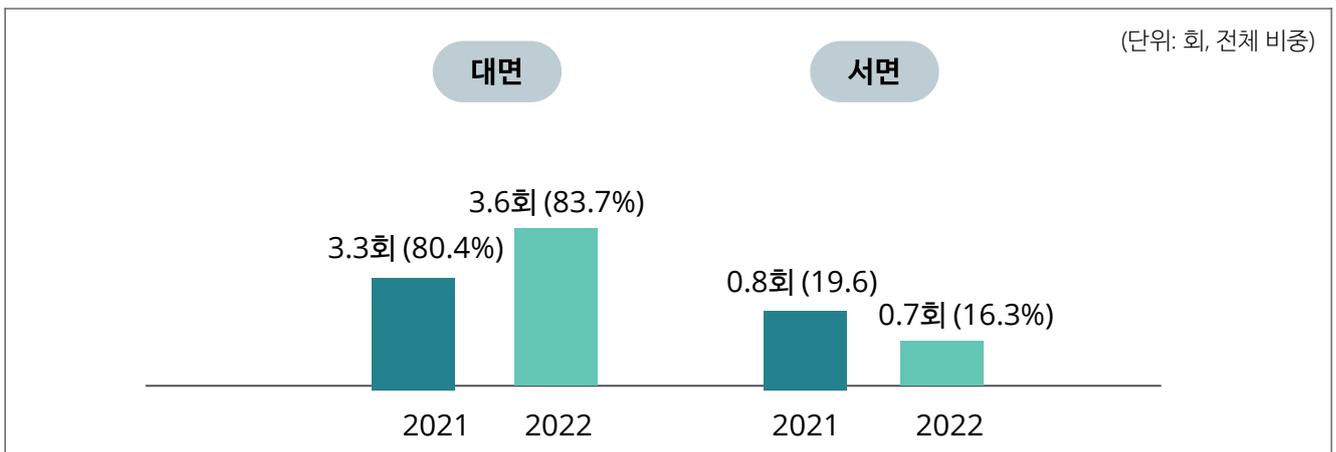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FY2022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는 4.2회로 전년 4.1회 대비 0.1회(2.4%) 증가함
  - 대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는 3.6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83.7%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년 3.3회(80.4%) 대비 0.3회(3.3%p) 증가한 수치임

<그림 1>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 <sup>3)</sup>



<그림 2>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 <sup>4)</sup>



3,4)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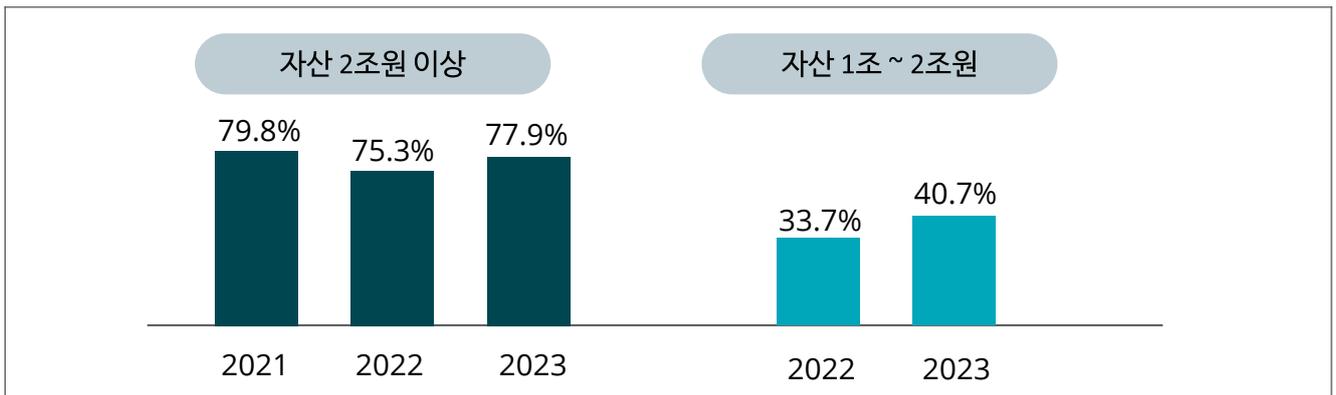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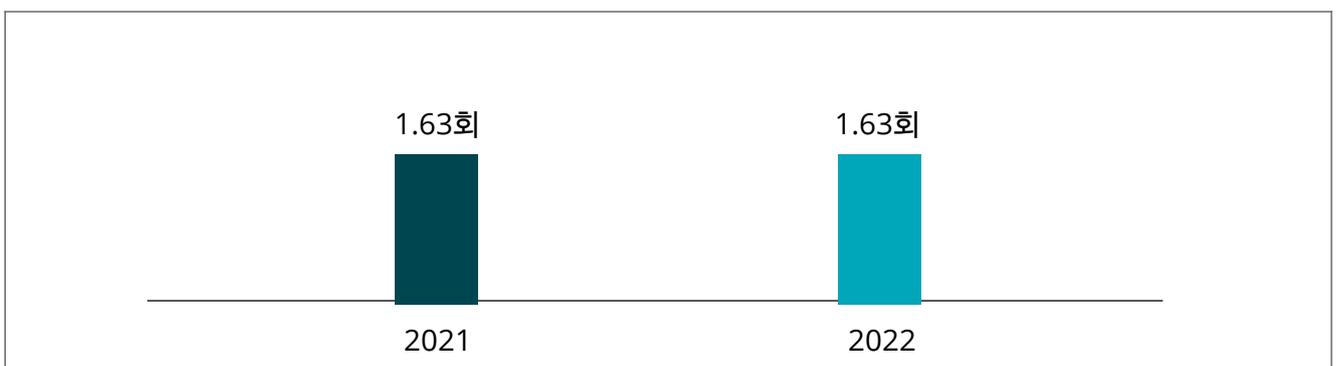
- FY2022, FY20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 조사결과도 함께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전기 대비 2.6%p 상승함
  - 서면보고를 제외한 대면 또는 화상회의에 한해 준수여부 판단기준이 강화된 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0.7%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함

<그림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sup>5)</sup>



- FY2022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 논의 평균 횟수는 1.63회로 전년과 동일함

<그림 4> FY2022 vs. FY2021 KOSPI 200 기업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중 KAM 논의 평균 횟수<sup>6)</sup>



5)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1년~2023년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지표 14번 분석

6)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선정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외부감사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0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지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함(2017)<sup>7)</sup>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sup>8)</sup>,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함

<표 3> 회계감사기준서에서 제시하는 핵심감사사항 선정시의 고려사항<sup>9)</sup>

구분	내용
중요왜곡표시위험 또는 유의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li> </ul>
추정 불확실성 및 경영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와 이와 관련된 유의적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된 분야</li> </ul>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기간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li> </ul>

###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2021~2022 사업연도 말 KOSPI 200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의 분류기준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기준<sup>10)</sup>을 적용함

7) 금융위원회,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2017.12.20

8)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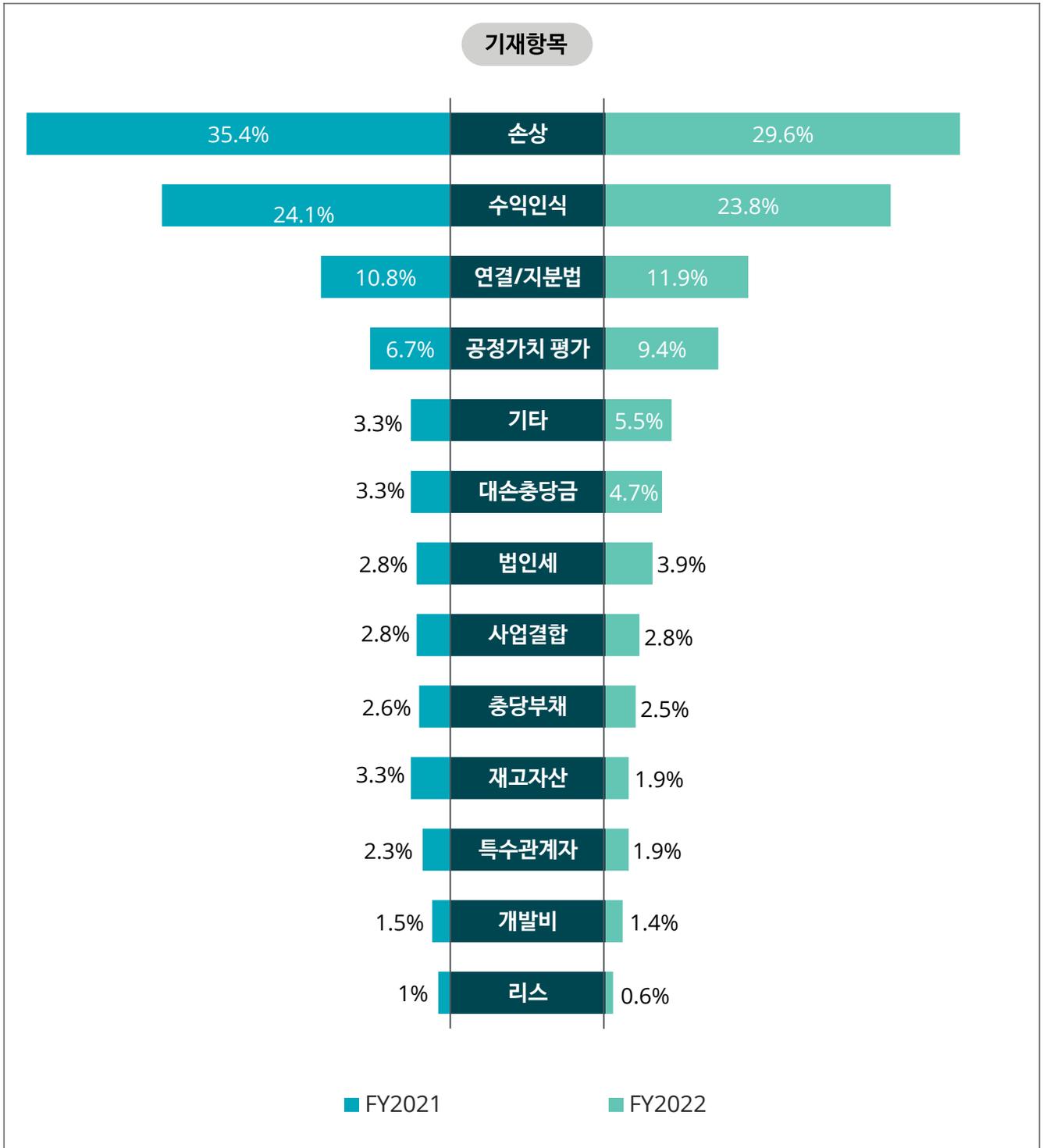
9)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10) 금융감독원,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21.12.01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그림 5>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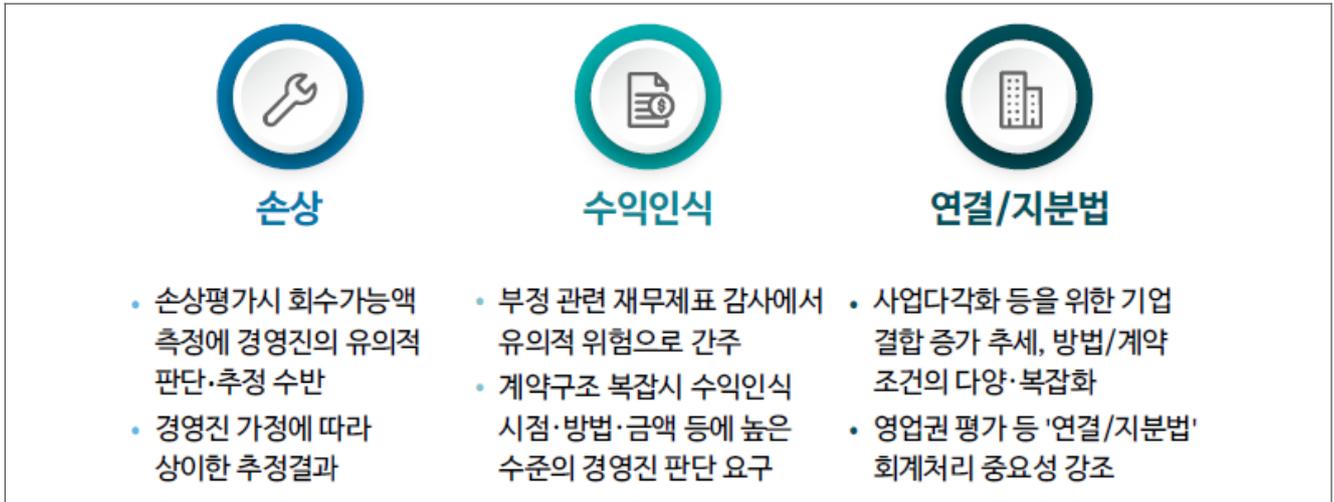


11)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감사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그림 6>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Top 3



- 2021년-2022년 모두 '손상(29.6%, 107개)<sup>12)</sup>', '수익인식(23.8%, 86개)', '연결/지분법(11.9%, 43개)' 이 상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주로 선정됨
- 손상 항목의 경우, 손상평가시 회수가능액 측정에는 할인율, 성장률 및 미래현금흐름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치가 수반되며,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에 따라 추정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수익인식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로 기업의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항목이며, 계약구조가 복잡한 경우 수익인식 시점·방법·금액 등에 높은 수준의 경영진 판단을 요구하므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음
- 연결/지분법 항목의 경우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sup>13)</sup> 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연결/지분법' 회계처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12)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 (예시: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22.3.30)에 따르면, '21년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248건) 및 66%(138조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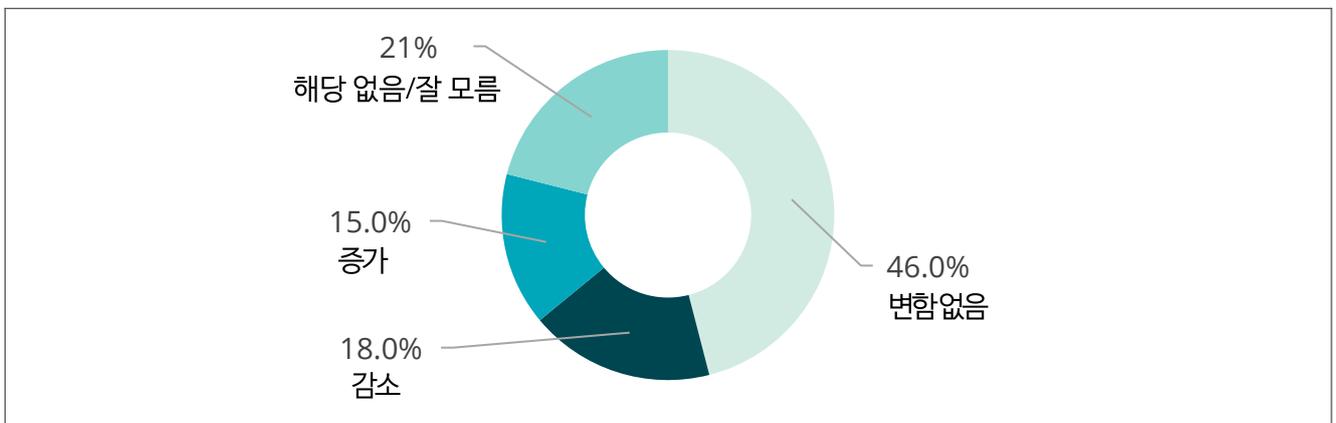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 글로벌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15%는 전년 대비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Critical Audit Matters, 이하 'CAM') 논의시간이 증가하였고, 4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글로벌 기업이 CAM 논의를 통한 인사이트 발굴에 노력함을 시사함

<그림 7>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전년 대비 외부감사인과의 CAM 논의 시간<sup>14)</sup>



- PCAOB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의 평균 CAM 개수는 1.42개이며, Large Accelerated Filer(이하 'LAF')<sup>15)</sup> 와 Non-Accelerated Filer(이하 'non-LAF')<sup>16)</sup> 기준에 따른 평균 CAM 개수는 <그림 8>에서 제시함
  - 감사보고서당 평균 CAM 개수는 전기대비 감소했으며, 단일 CAM을 기재한 감사보고서의 비율은 증가함

14)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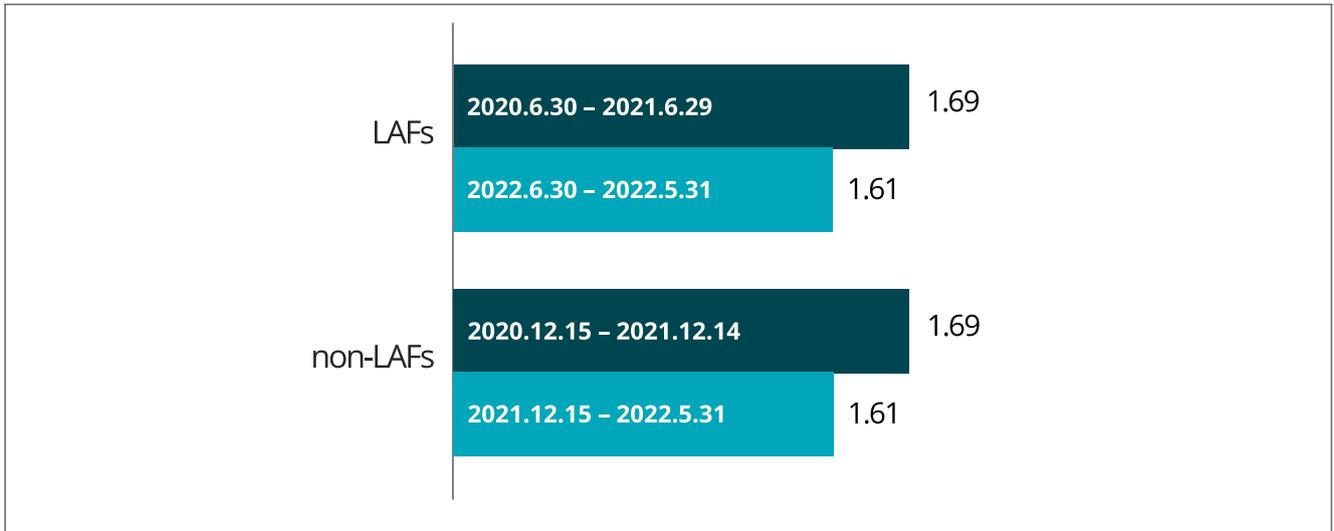
15)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19) Public float가 7억 달러 이상인 상장법인

16) Public float가 7천5백만 달러 미만인 상장법인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그림 8> 미국 감사위원회 FY2021, FY2022 평균 CAM 개수 <sup>17)</sup>



- LAF 감사에 참여한 파트너의 41%가 CAM이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고 답함 <sup>18)</sup>
- LAF 및 non-LAF를 통틀어 일부 응답자는 선정된 CAM에 대한 주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sup>19)</sup>
- 일부 LAF 및 non-LAF의 감사위원장은 CAM을 통해 경영진과 CAM 주제, 재무제표 문구 변경, 궁극적으로는 보다 충실한 공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고함 <sup>20)</sup>

17, 18,19,20) PCAOC, 「Interim Analysis Report: Further Evidence on the Initial Impact of Critical Audit Matter Requirements」, 2022.12.7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1. 감사위원회 교육

### 감사위원회 교육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sup>1)</sup>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sup>2)</sup>에 따라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반이 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적절한 감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해야 함
- 2022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sup>3)</sup> 건은 별도로 기재하였고, 공시 서식 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함

<표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구분	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3.0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교육일시,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성명 기재) 및 불참한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을 기재한다.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일자별로 기재하고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li> </ul>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 기준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li> <li>• 단순한 서면 교육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교육 혹은 화상 강의 등 대면강의에 준하는 경우만 인정함</li> </ul>

1)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018, 05, III.5.1(원칙), III.5.2(교육유형), III.5.3(교육내용)

2)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2.5.10, 4.1.3

3)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감사위원회 교육 인정 범위를 차용하여 단순 안건 설명, ②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교육(예: 미술, 심폐소생술 교육 등), ③ 교육일자 미기재 건은 교육으로 미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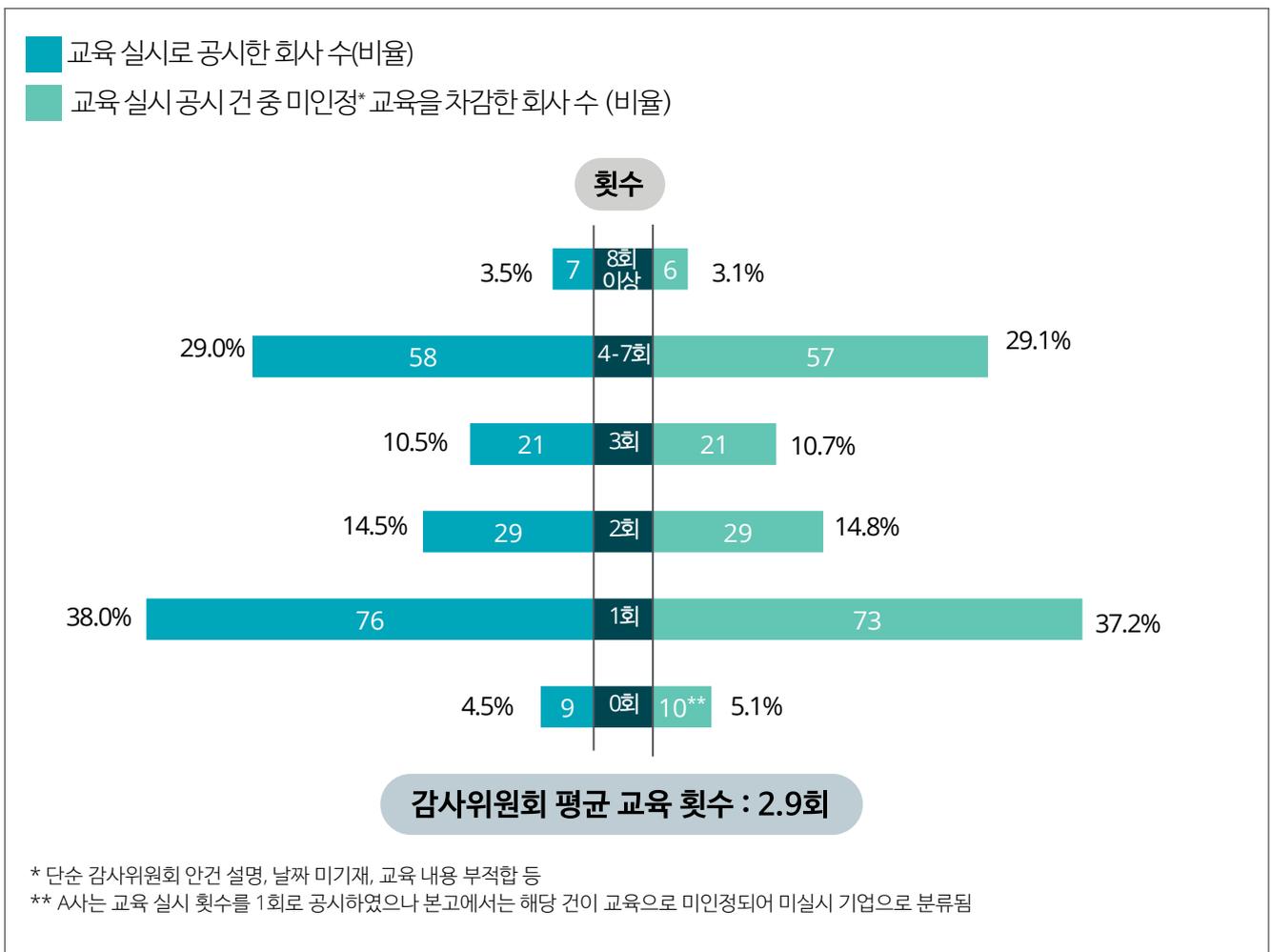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1. 감사위원회 교육

### 1) 교육 실시 횟수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횟수는 <그림1>과 같으며, 상기의 설명과 같이 공시된 교육의 내용, 범위 및 공시 서식상의 오기재는 교육으로 미인정한 집계도 제시함
- 교육 실시 횟수는 미인정 교육을 차감한 회사 수를 기준으로, '1회'(73사, 37.2%) - '4~7회'(57사, 29.1%) - '2회'(29사, 14.8%) - '3회'(21사, 10.7%) - '0회'(10사, 5.1%) - '8회 이상'(6사, 3.1%)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교육을 미실시한 기업은 10사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감사위원회 교육 횟수는 '2.9회'이고, 교육 횟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업은 J사(33회), G사(18회), H사(13회)로 나타남

<그림 1>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횟수<sup>4)</sup>



4)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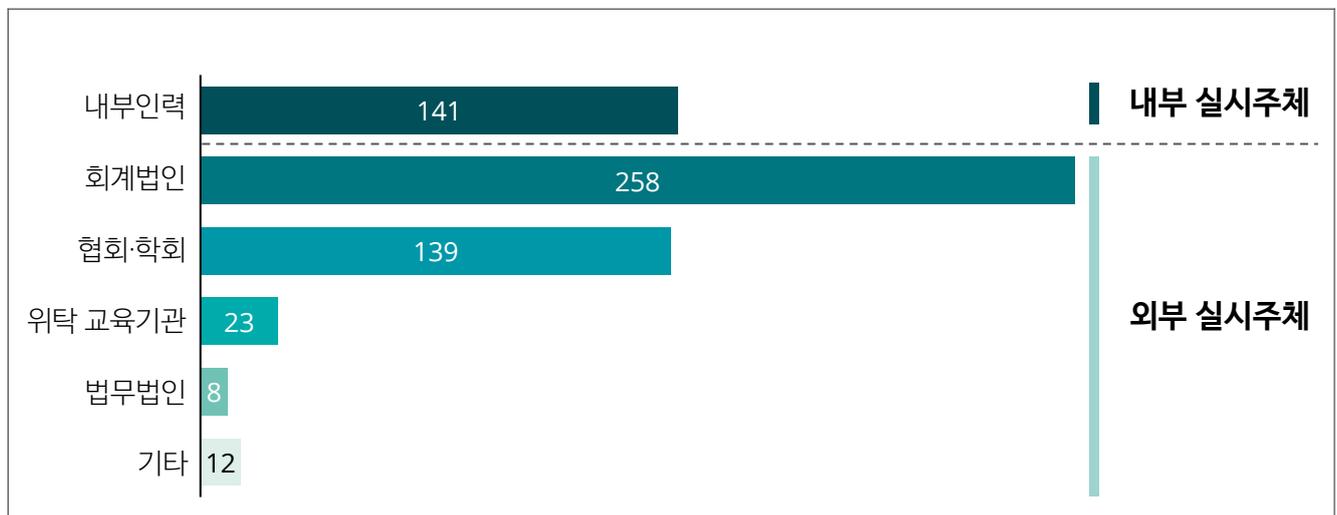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1. 감사위원회 교육

### 2) 교육 실시 주체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은 총 58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교육 주체가 외부인력인 경우는 440회(75.7%), 내부인력인 경우 141회(24.3%)로 나타났고, 전체 교육 실시 주체 기준으로 '회계법인'(258회, 44.4%) - '협회·학회'(139회, 23.9%) - '위탁 교육기관'(23회, 4.0%) - '법무법인'(8회, 1.4%) - '기타'(12회, 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실시 주체<sup>5)</sup>



5)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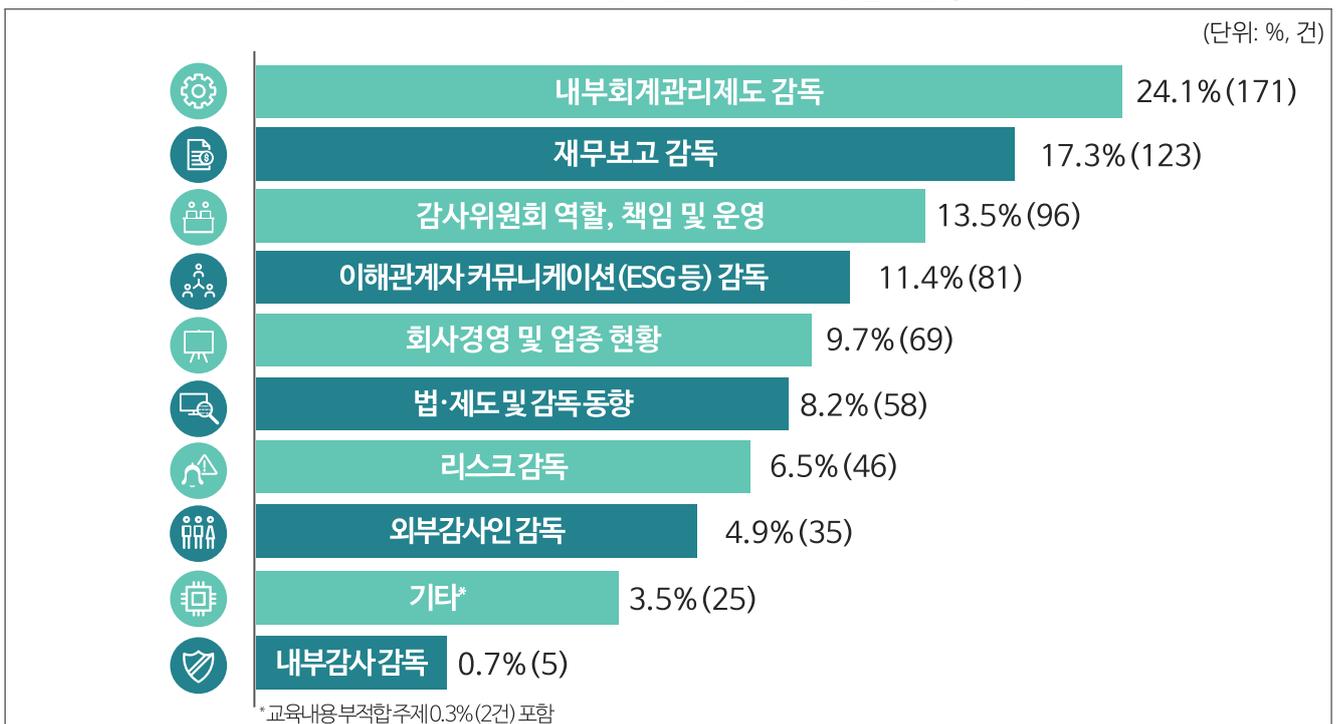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1. 감사위원회 교육

### 3) 교육 주제 및 유형

- 한 회차의 교육이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주제별로 중복집계한 결과를 <그림 3>로 제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71회, 24%) - 재무보고 감독(123회, 17%)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96회, 14%)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81회, 11%) - '회사경영현황 및 업종현황'(69회, 10%) - '법·제도 및 감독 동향'(58회, 8%) - '리스크 감독'(46회, 6%) - '외부감사인 감독'(35회, 5%) - 기타(23회, 3%) 순임
- 1순위 -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독': 내부회계 교육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포함사항으로, 동 규정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점이 영향이 있을 것임
  - 2순위 - '재무보고 감독': 감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감독 영역이자 최근 많이 발생된 부정 및 횡령사건으로 인해 감사위원회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3순위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교육의 대표적 주제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 책임, 관련법규에 대한 내용이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근간이 되는 주제임
  - 4순위 주제: 'ESG'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로, ESG정보공시는 비재무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위원회가 주의를 살펴야 하는 영역임

<그림 3>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sup>6)</sup>



6)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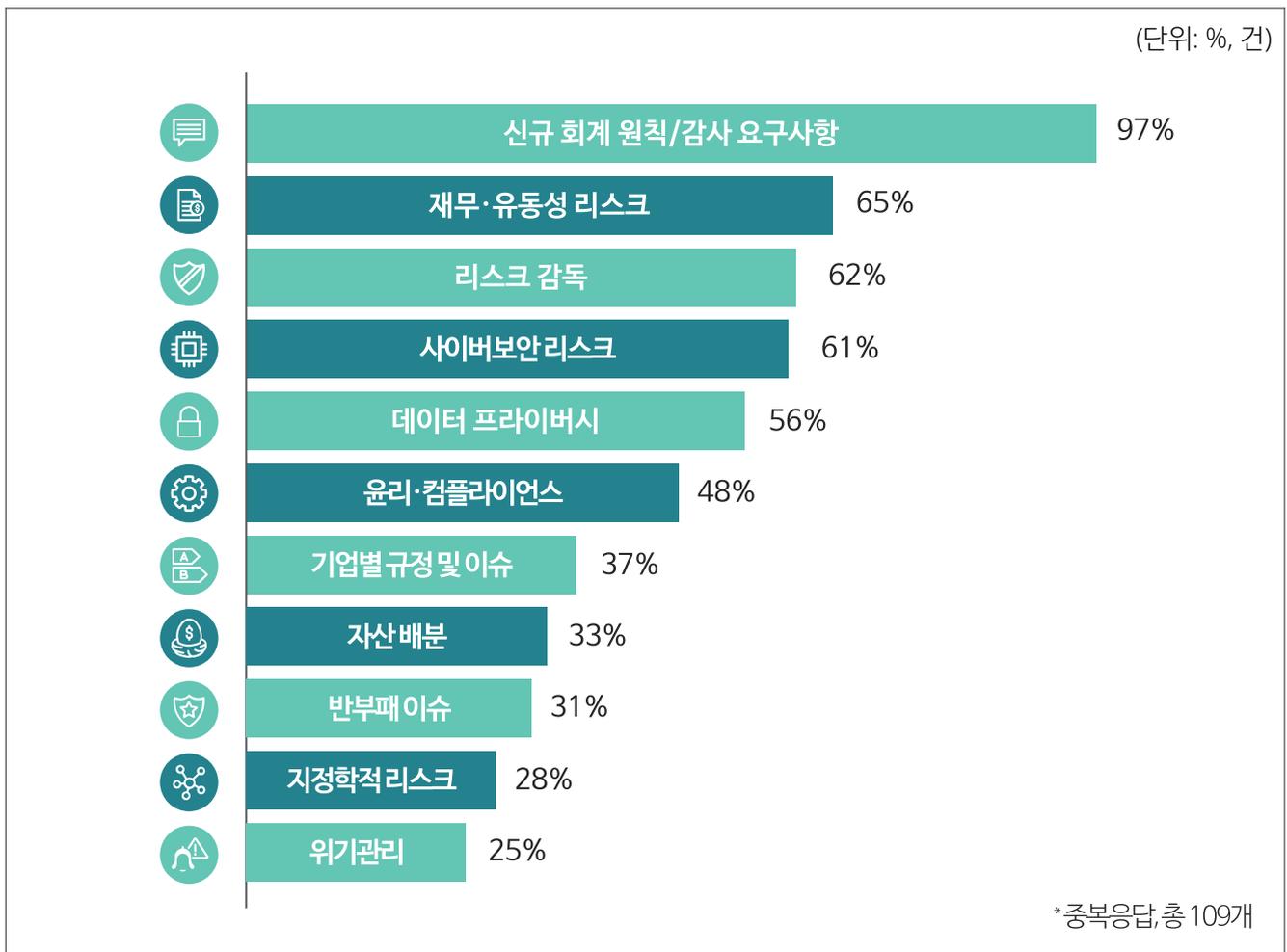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1. 감사위원회 교육

### 글로벌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sup>1)</sup>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sup>2)</sup>에 따라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반이 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적절한 감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해야 함
- 2022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sup>3)</sup> 건은 별도로 기재하였고, 공시 서식 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함

<그림 4> 글로벌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 <sup>7)</sup>



7) 딜로이트 글로벌, 「Back to basics, Board education and evaluations」, 2022.09, '22년 7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15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조사결과, 응답자는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됨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2. 감사위원 보수

### 감사위원 보수

-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중 선임되므로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적용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됨
  - 정관 또는 주주총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보수총액 한도만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금액은 이사회가 이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 감사위원 보수는 회사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상으로, 월급,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함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7,100만원이며 전기대비 6.1%p 상승함
  -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감사위원 평균보수(5,286만원)의 1.3배이며 자산규모나 매출규모에서 전체 상장법인 중 산업별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한 보수수준이라 고려됨

<그림 1> KOSPI 200 기업 vs. 유가증권시장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sup>1)</sup>

	KOSPI 200 상장법인			유가증권 상장법인			
	FY2021	FY2022	전기대비	FY2021	FY2022	전기대비	
사외이사	6,519만원	6,795만원	4.2%p ▲	사외이사	4,558만원	4,798만원	5.3%p ▲
감사위원	6,692만원	7,100만원	6.1%p ▲	감사위원	4,926만원	5,286만원	7.3%p ▲
감사위원외 사외이사	6,177만원	6,374만원	3.2%p ▲	감사위원외 사외이사	3,929만원	4,064만원	3.4%p ▲

-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보수의 지급총액만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별 지급액이나 보수 산정 기준은 알 수 없음
  -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수총액 5억 원 이상의 상위 5인<sup>2)</sup> 및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등기임원<sup>3)</sup>에 대한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사외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보수지급 근거를 알 수 없음

1)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유가증권시장 FY2022 및 FY2021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보수

2)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의2,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3)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2. 감사위원 보수

- 지난 4월, 은행권의 임원의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Say-on-Pay)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가 강화될 예정임<sup>4)</sup>

### 글로벌 감사위원 보수 현황

- 글로벌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 수준은 국내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사외이사의 경우 국내 대비 기업규모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사외이사 대비 위원회 겸임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회의자료 검토, 비공식 회의, 외부감사인 및 유관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 투입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S&P 500 기업의 FY2023 기준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143,106로 전기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이사회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의 보수가 가장 높은 경향이 나타남

<그림 2> S&P 500 기업 사외이사 보수<sup>5)</sup>

		FY2022	FY2023	전기대비	
기본급	사외이사	\$ 136,133	\$ 143,106	5.1%	▲
	위원				
추가 기본급	감사위원회	\$ 14,059	\$ 14,424	2.6%	▲
	보상위원회	\$ 11,398	\$ 12,027	5.5%	▲
	임원후보추천·거버넌스위원회	\$ 9,619	\$ 10,185	5.9%	▲
	위원장				
보수 지급방법	감사위원회	\$ 28,744	\$ 29,636	3.1%	▲
	보상위원회	\$ 22,675	\$ 23,611	4.1%	▲
	임원후보추천·거버넌스위원회	\$ 19,179	\$ 20,057	4.6%	▲
	현금 37%			기타 5%	
회사가 제시한 평가항목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가 활성화됨					

4) 금융위원회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12월 8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  
 5) Spencer Stuart, 「2023 S&P 500 Compensation Snapshot」, 2023.08

# I.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3. 결언

---

-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국내외 감사위원회의 현황파악과 관련한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변화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명시된 회계감독과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이사회 위임사항을 심의·결의하여, 최고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추구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점이 '회계투명성 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의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사유임
- 추후로도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상정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간활동 및 세미나 등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언할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sup>1)</sup>

#### 요약

-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음
- 2024년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함
- '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요

- 금융감독원은 '24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오류사례를 사전 예고함
- '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4년 중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할 예정임

<표 1> 재무제표 중점심사 절차

구분	내용
사전예고 ('23.6월)	• 회계이슈 선정 공표
결산 감사 ('24년 초)	• 기업의 결산,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대상 선정 ('24년)	• 회계이슈별 심사대상회사 선정
심사 실시 ('24년 ~)	• 재무제표 중점심사

※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금융감독원,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2023.6.14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 1)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됨
    -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대손충당금)
- 금융감독원은 건설업,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함
- 회사는 금융상품의 손상기준회사는 금융상품의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여야 함
  - 일반모형·간편법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고정된 충당금 설정률을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통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가능함

<표 2>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일반모형(기대신용손실 인식)과 간편법(항상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 적용)중 회계정책 선택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	• 간편법을 적용하여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하여 기대신용손실 인식

-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내역과 변동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음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표 3>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위반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사는 거래처(甲)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동사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갑의 설비자산 등을 이미 상각완료 된 자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과대평가하여 연체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사는 거래처(종속회사 乙)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객관적인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동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등 손상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li> </ul>

### 2)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

-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CB) 제3자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하였음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및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22.5.4.)<sup>2)</sup>에 따라 해당 콜옵션의 회계처리 및 주식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 횟수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함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식 공시해야 함

<표 4>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위반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CB를 발행하면서, 해당 CB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자 콜옵션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회사는 무상으로 제 3자를 지정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사는 제3자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환권대가(부채)와 상계하여 자산(파생상품)총액 및 부채총액을 과소상계</li> </ul>

2) 금융위원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2022.5.4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3)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됨
- 금융감독원은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함
-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 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해야 함

<표 5>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진행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li> </ul>
진행률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의적인 비효율로 인한 발생원가 등 투입법 적용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li> <li>-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li> </ul> </li> </ul>
주석 공시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에 유의하고, 계약 잔액 등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 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영업부문별 추정 공사손익 변동 및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등</li> </ul> </li> </ul>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표 6> 장기공사수의 회계처리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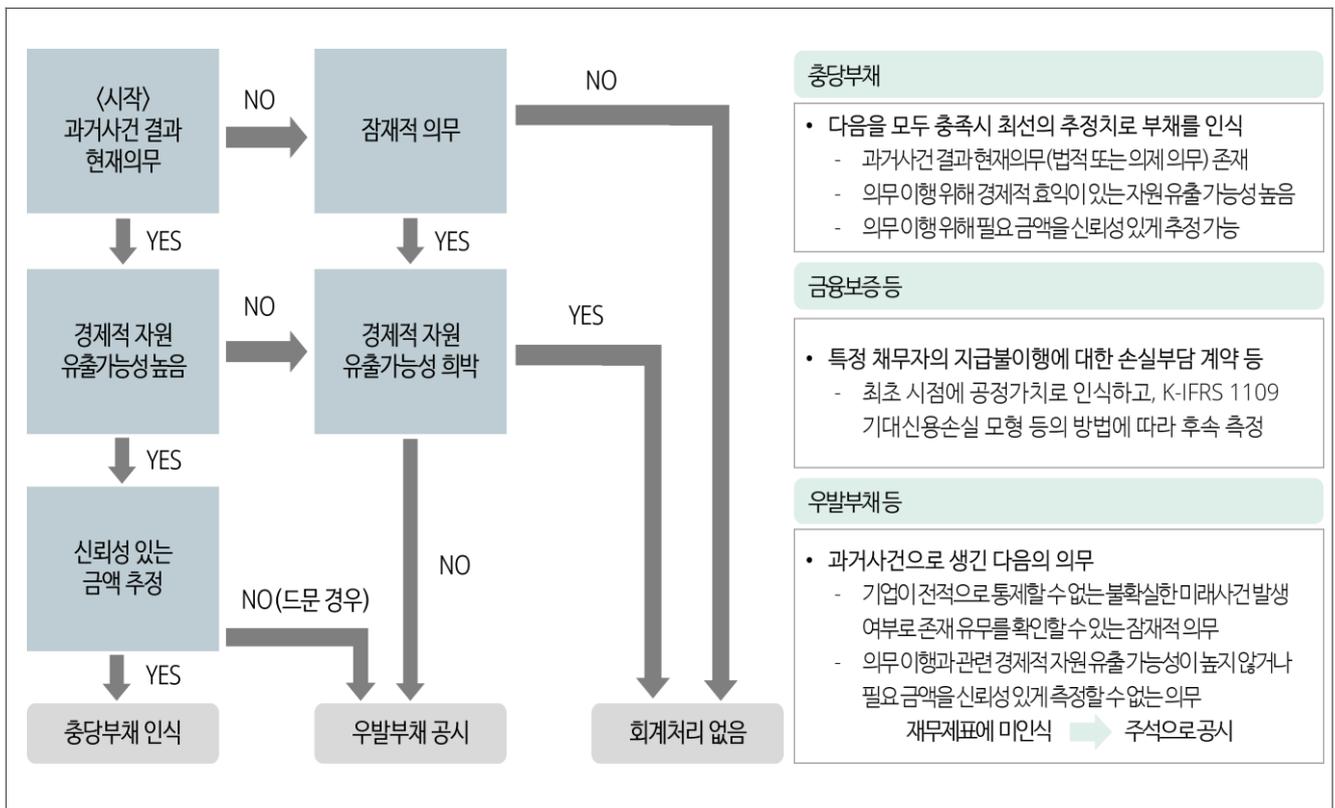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 원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사는 제3자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환권대가(부채)와 상계하여 자산(파생상품)총액 및 부채총액을 과소상계</li> </ul>

#### 4) 우발부채 공시

□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인식 규정 요약 3)



3) 금융감독원,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19.6.26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매출액 관련 총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함
-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총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해야 함

#### <표 7> 장기공사수의 회계처리 위반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사는 사업권 관련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하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li> </ul>

#### 향후 계획

- '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 실시 예정임
- '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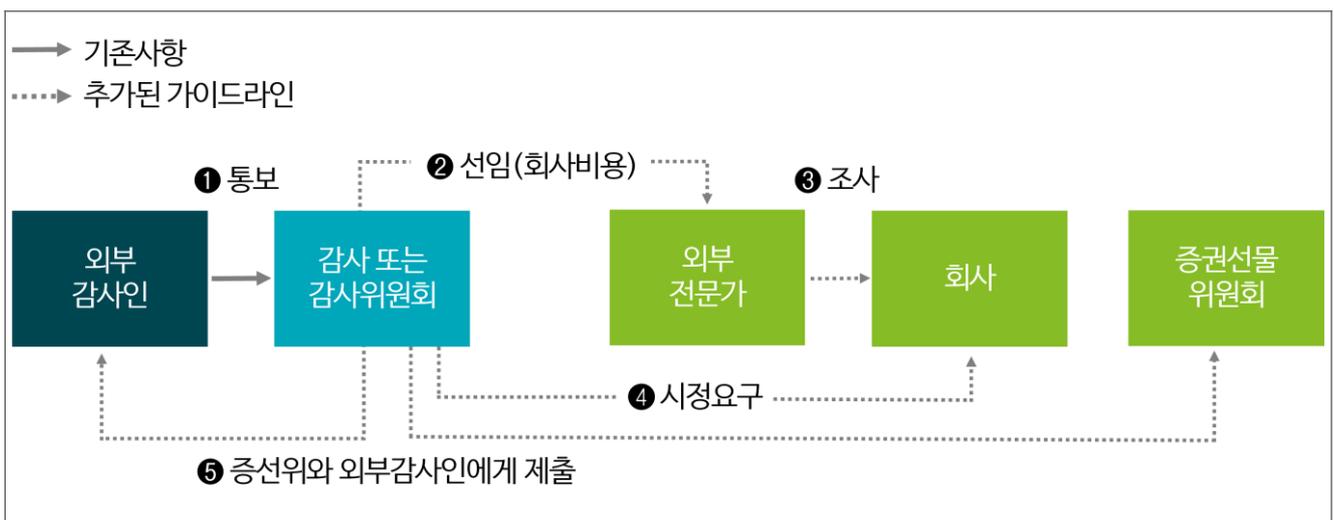
#### 요약

- '18년 정부가 도입한 「회계부정조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경영진, 지배기구 외 종업원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고, 외부전문가 선임시 전문성 독립성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증선위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 등 보고 참고양식을 마련함
- 금융당국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임

#### 추진 배경

- 정부는 '18.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함
  -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외부감사인인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수행 후, 조사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sup>2)</sup>

〈그림 1〉 신외부감사법 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1)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2023.7.14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는 '19.12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sup>3)</sup>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 '19년(5건) '20년(7건), '21년(17건), '22년(15건)임
-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중요사항이 부실 보고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표 1>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구분	내용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 도입</li> <li>•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 신설</li> </ul>
가이드라인 제정('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위반에 외부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오해와 기업 비용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li> </ul>
가이드라인 개정('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li> </ul>

-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 1)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 ① 회계부정 의미 명확화

-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하였음
  - 현행은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도 통보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3)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12.24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표 2> 회계부정 의미 명확화 개정 내용

현행	개정
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됨	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b>경영진</b> (「상법」 제 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 <b>지배기구, 종업원</b> 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됨

### ② 절대금액 통보기준 반영

-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함
  -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다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sup>4)</sup>

<표 3> 절대금액 통보기준 반영 개정 내용

현행	개정
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함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함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b>다만,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b>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7항 제4호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2)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함
  - 현행은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음
  -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표 4>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내용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설&gt;</li> </ul>	<p>③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 선임 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li> <li>- 전문성이란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함</li> <li>- 독립성이란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척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li> <li>② 조사대상 기간동안 회사(중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li> <li>③ 조사대상 기간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li> </ul> </div>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3)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 등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역,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기간 등을 추가함
  - 현행은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음
  -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내부조사를 요청한 시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 제출시기 등을 추가함

<표 5>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내용

현행	개정
<p>②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li> <li>②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li> <li>③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li> <li>④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li> <li>⑤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li> </ol> </div>	<p>②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u></li> <li>② <u>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u></li> <li>③ ~ ⑦ &lt;현행 ① ~ ⑤와 같음&gt;</li> </ol> </div>

-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양식(예시)을 (1)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한 경우와 (2)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한 경우로 구분하여 추가함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임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sup>1)</sup>

#### 요약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23.10월,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추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
-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과 시장 참가자의 요구,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이 반영되었으며, '23년 핵심지표 준수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62.3%임
- 제출시한이 '24년 5월 말경인 '24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24년도 제출이 의무화되어 제출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개요 및 경과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임<sup>2)</sup>
- '17.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2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됨<sup>3)</sup>

<표 1>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구분	'17년	'19년	'22년	'24년	'26년
의무공시 대상	자율공시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전체

-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년, '22년 두 차례 개정하였음
  - 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의 공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년 말 점검결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2.3%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 되었음<sup>4)</sup>

1)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2

2)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3.4

3) 금융위원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2021.1.14

4) 한국거래소, 「'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3.12.7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개정 배경

- 금번 개정은 '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함
  - '23.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 G20/OECD 지배구조원칙(23년 개정) 및 한국 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동향을 참조하였으며,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함

<그림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sup>5)</sup>



5) 한국거래소, 「202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 설명회」, 2023.11.1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1) 핵심지표

-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특히 준수를 장려하는 핵심적인 지표 15개로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구조 현황 파악이 가능함
-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일부 핵심지표를 정비함

<표 2> 핵심지표 주요 개정사항

신설항목	삭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li> <li>•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li> <li>•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li> </ul>

- 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전년도 60.7%에서 62.3%로 개선함<sup>6)</sup>
  - 최근 ESG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자산 1조원~2조원 기업이 보고서 의무제출이 2년차임에도 핵심지표 준수율에 있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과 17%p 이상격차가 지속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요구됨

<표 3> 연도별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현황

구분	전체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 2조원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60.7%	62.3%	66.7%	68.5%	49.6%	51.3%

※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에 대한 평균치임

6) 한국거래소, 「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3.12.7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핵심지표 중 6개 지표는 준수율이 60%이하로 여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함

- 핵심지표⑦ 및 핵심지표⑫ 준수율의 하락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현황

구분	핵심지표	'22년 준수율	'23년 준수율		
			전체	2조 이상	1~2조
주주 (4개)	① 주총 4주전에 주총 소집공고 실시	26.8%	32.7%	39.7%	20.2%
	② 전자투표 실시	75.3%	78.9%	82.4%	72.8%
	③ 주총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총 개최	68.2%	74.2%	79.9%	64.0%
	④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1회 이상 주주 통지	46.5%	46.5%	57.8%	26.3%
이사회 (6개)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34.5%	40.9%	52.9%	19.3%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77.3%	78.6%	87.7%	62.3%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2.1%	19.5%	24.5%	10.5%
	⑧ 집중투표제 채택	3.7%	3.5%	4.9%	0.9%
	⑨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62.9%	65.4%	74.5%	49.1%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8.3%	99.7%	100%	99.1%
내부 감사 기구 (5개)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90.3%	92.1%	98.0%	81.6%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52.2%	47.5%	49.5%	43.9%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92.6%	92.5%	97.1%	84.2%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60.9%	64.5%	78.4%	39.5%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98.7%	98.1%	99.5%	95.6%
평균		60.7%	62.3%	68.5%	51.3%

※ 음영부분은 준수율이 낮은 핵심지표에 해당함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 세부원칙

<표 5> 세부원칙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내용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후속조치로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li> </ul>
소액주주·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과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li> </ul>
메자닌 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하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자본조달 결정 시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공시</li> </ul> <p>*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p>
이사회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성(性) 다양성확보 법제화<sup>6)</sup>에 따라 성별, 연령 및 경력 등으로 다양성 기준을 확대하고,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 여부 및 다양성 요건 미준수 시 사유 기술</li> </ul>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 보수 적정성 관련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남용 방지 정책 공시</li> </ul>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를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를 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li> <li>1차적인 당국의 판단(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li> </ul>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3) 보고서 형식체계

- 보고서 체계에 있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된 항목을 단순 기술하도록 한 반면, 개정 가이드라인은 각 원칙의 준수 여부를 100자 이내로 간략 기술하는 방식으로 반영함
- 세부원칙 준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부 정책 시행 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개편함
  - XBRL 개발에 따라 자동 DB화 가능함

#### 향후 일정

- 한국거래소는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24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 추진 계획을 밝힘
  -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 예정임(제출시한: '24년 5월말)
  - 공시기한 미준수, 허위공시, 공시항목 오기재·누락 시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 예정임
  - 한국거래소는 공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 및 포상할 계획임('23.12월)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별첨]

<표 6> 핵심지표 주요 개정사항

구분	'22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23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비고
주주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현행과 동일)
	• 전자투표 실시		(현행과 동일)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행과 동일)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현행과 동일)
	• (신설)	• 현금배당관련예측가능성제공	상법 유권해석 등 배당절차 관련 법제 개편 반영
이사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현행과 동일)
	•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사외이사카이사회의장인지여부	의미를 명확히 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 집중투표제 채택		(현행과 동일)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현행과 동일)
	• (신설)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이사회 구성원에 다양성 요소를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 반영
	•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삭제)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짐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별첨]

<표 6> 핵심지표 주요 개정사항

구분	'22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23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비고
감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삭제)</li> </ul>	실효성이 낮은 점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li> </ul>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li> </ul>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li> </ul>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li> </ul>		(현행과 동일)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sup>1)</sup>

#### 요약

- '23.11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음
-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배경

- 법무부는 '23.1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사항을 공표함<sup>2)</sup>
-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23.8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음<sup>3)</sup>
  -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3.11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1)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1.24

2) 법무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1.26

3)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8.24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4

###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 1)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회의개최, 출석, 투표 등 회의 전반을 전자화 하였으며,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

<표 1> 전자주주총회 제도 관련 상법 개정법률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주 동의 방식을 구체화 하도록 함</li> </ul>	안 제363조제1항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또는 주주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출석할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li> <li>• 2)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그 하자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 제364조의2,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 신설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4

###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 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함
- 주식 매수가액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고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함

<표 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관련 상법 개정법률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 제530조의12제2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회사의 영업양도나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업양도나 양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주주총회 소집 시 명시한 매수가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주식매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li> <li>• 2) 회사는 매수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한 매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 제374조의제2항~제5항, 안 제374조의2제6항 신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임
- 법무부는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질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5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sup>1)</sup>

### 요약

- '23.1월 금융위와 법무부는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며, 방안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음
-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에 도움이 되고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증시 변동성도 완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임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여 투자자는 배당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함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23.1) <sup>2)</sup>

1)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1.24

2) 금융위원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23.1.31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5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1) 제도개선 방안

-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중이나,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해당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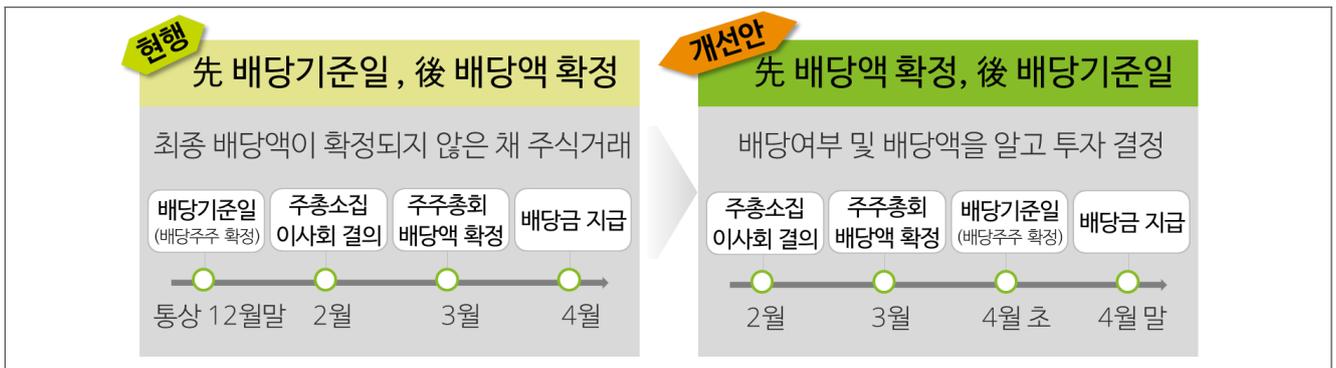
<표 1> 결산배당(상법) 개선방안

	현황	개선(안)
결산배당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기업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됨</li> <li>•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354조 3항에 따른 '배당 받을 권리를 행사한 날'은 "배당금액과 배당을 받을 자가 정해지고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li> </ul> </li> </ul>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5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 분기배당 절차도 선배당액확정, 후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예정

-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을 자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의 이후의 날을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표 2> 자본시장법 상 상장회사 분기배당 개정(안)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u>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써</u>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u>1개월 이내에</u> 지급하여야 한다. <u>다만,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li> </ul>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12월 결산 상장회사(유사 코스닥) 2,267개사 중 663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동 상장회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표 3>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유가			코스닥			합계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780	185	23.7	1,487	451	30.3	2,267	636	28.1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 2) 관행개선 방안

-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상장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
  -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상장협·코스닥협에서 '24.1월까지 마련 예정임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⑤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 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 됨
- 증시변동성 완화 및 시장효율성 제고
  -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 할 예정임
-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하여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시장의 공통서식으로 배당기준일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공시예시를 마련하여 상장회사에 제공할 예정임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정관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 '23년 중 배당절차 개선을 완료한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예정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⑥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sup>1)</sup>

#### 요약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음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개요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임
  - '23년의 경우 전년(189사) 대비 40.7% 감소한 112사가 감사인 선임기한(96사)·절차(16사) 위반으로 지정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함

<표 1>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감사인 선임에 대한 감사인 지정현황 <sup>2)</sup>

(단위:사)

구분	'20년	'21년	'22년	'23.10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1,744	33,250	37,519	41,274
지정(선임기한·절차위반)	52	128	189	112

1) 금융감독원,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2023.12.14

2) 금융감독원,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현황」, 2023.2.1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6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표 2>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 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주식 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 (사원총회 승인)

-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임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함

#### 1) 주권상장회사

- 등록 회계법인(現 41)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2)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표 3>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기준 안내

기준	현행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or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	1천억원 이상 (현행 유지)
	②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5천억원 이상 (기준 상향)

※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현행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함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⑥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3) 비상장주식회사

-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함
-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4) 유한회사

-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함

#### 주요 위반 사례

-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⑥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표 4> 주요 위반 사례

구분	내용
선임기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는 '21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600억원으로 '22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2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가'회계법인으로 '22.4.30.체결함</li> <li>'22년 결산결과 '23년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A사는 작년과 유사한 시점인 '23.4.29. 내부적인 감사인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외부감사인을 '가'에서 '나'회계법인으로 변경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함</li> </ul> <p>→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선임기한인 <b>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3.2.14.)</b>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선임함</p>
선정절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기타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2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li> <li>B사는 급격한 성장과 합병으로 '22년 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li> </ul> <p>→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함</p>
감사인선임위원회 인원 수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사는 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주주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총 7인의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함</li> </ul> <p>→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에서 최대 6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p> <p>*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함</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li> <li>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 자격으로 선임하여 위원요건 위반</li> </ul> <p>*외감법상 사외이사는 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선임·등기된 사외이사를 의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자격요건 위반</li> </ul>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리더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mailto:hyunjeong@deloitte.com)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mailto:hbkim@deloitte.com)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mailto: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딜로이트 refers to one or more of 딜로이트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딜로이트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딜로이트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딜로이트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딜로이트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